

2002

인권 활동가대회 자료집

인권 활동가대회 자료집

2002 전국 인권활동가대회 자료집

날짜 : 2002.11.30(토)~12.1(일) (1박2일간)

장소 : 조치원 청소년수련원

Schedule

11월 30일(토)

13:30~14:00	참가단체 접수 및 명단확인
14:30~15:00	참가단체 1차 소개
15:30~17:50	전체토론(자유토론/분임토론/총화)
17:50~19:00	저녁식사
19:00~19:30	참가단체 2차 소개
19:30~21:00	소주제 토론1
21:10~22:40	소주제 토론2
22:40~	문화마당(참가단체 3차 소개)

12월 1일(일)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소주제토론 총화
10:00~	폐회행사 : 1. 소주제토론총화 내용 발표 2. 사안별 결의안 발표 3. 대회 참가자 마무리 발언 4. 폐회 선언

전체토론 발제 1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박 래 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들어가며

한국의 인권운동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생겼으며, KNCC 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결성되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이들 단체들은 권력의 폭압을 고발하고, 양심수들의 석방을 지원하였고, 표현의 장이 막힌 현실에서 기도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화의 신념을 심어주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지속적인 피해자 단체로 민가협과 유가협이 등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종교권 단체만의 인권운동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1987년을 경과하면서 민변과 민주법연 등의 전문가 단체들이 생겨났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등장했다.

이때까지의 인권운동은 군사독재와 맞서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자유권 중심의 운동이었다. 인권운동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고민되었으며,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그런 가운데 1987년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단일한 전선에 묶였던 운동진영은 각자의 고유 영역들을 찾아 나갔으며, 더욱이 1990년 초반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한국의 진보운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런 가운데 인권운동은 이전까지 화려하면서도 투쟁적이었던 역할에서 이제는 전문적인 영역의 전문적인 활동을 요청 받게 되었으며, 자생적인 운동 조직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수많은 소수자들의 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의 영역이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거대담론에 가려졌던 인권의 문제를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자각하게 되었던 것을 반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주로 양심수 석방 운동에 매달렸던 인권운동은 이전의 종교권 인권단체들은 종교단체에 인권위원회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라는 동질감을 갖는 이들을 규합했고, 지원단체들도 늘어났다. 국제연대운동을 주로 하는 인권단체들도 생겨났으며, 미미하나마 사회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나타났고, 종합적인 인권센터를 지향하는 단체들도 생겨났으며, 지역에서도 인권운동단체들이 상당수 발족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인권사안들에 대해 그때 그때마다 공대위가 탄생하여 활동하다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다시 공대위로 뭉치곤 했다.

인권운동은 새로운 인권단체들이 생겨날 때마다 인권운동의 영역을 그만큼 확장해갔다. 자유

권 중심의 활동에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창하는 활동, 사회권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활동에서 국제연대 활동에 이르기까지 인권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전과는 질을 달리 하는 영역으로 분화해갔으며, 이전의 거대 민주운동 단체나 시민운동 단체들도 인권운동에 대해 기존의 체제내적 운동이라고 폄하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마치 백화제방과도 같은 인권단체들은 각개 약진하면서 한국의 인권 수준을 끌어 올려왔고, 그런 인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단체들이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지만, 아직껏 한국의 인권운동 역량은 사회적 요구를 감당할 만큼 크지 못하였고,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 간의 인권운동의 연대활동에 대해 되짚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며,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이후의 과제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시대의 인권운동의 연대활동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때인 것이다.

필자가 제안 받은 주제는 10년 간의 인권운동 진영이 전개한 연대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제 자체가 매우 범위가 넓고, 기존의 객관적인 정리된 바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자칫 주관에 빠진 일면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욱이 지금 필자가 처한 위치는 이런 정리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읽어주시길 바란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변화된 인권운동의 상황을 개괄하여 보고, 그 변화 과정에서 인권운동 진영이 연대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였고, 그 연대활동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연대활동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리를 하지 못한 점을 우선 사과드리며 본문으로 넘어간다.

2. 지난 10년의 인권운동 중 연대활동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1992년까지의 인권상황은 과거 1980년대의 연장 위에 있었다. 정치적 상황이 우위를 점하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장기 1980년대가 끝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의 등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세력에 편승하여 집권하였던 김영삼 정권의 인권개혁 의지는 사실 기대할 수 없었다.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의 청산을 위해 국가제도와 악법을 개폐해야 했고, 이전까지 가입만 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국제인권조약들을 성실히 이해하여야 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과제들은 보수세력의 이른바 주사파 파동 이후 개혁적이었던 정권의 성격이 보수로 회귀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영삼 정권은 국제화나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강조하였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은 지구적 자본의 공세 앞에 IMF 구조금융을 받아들이고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인권운동은 지금까지의 대권력 투쟁, 거대담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열려진 공간 위에 국제연대에 눈을 뜨게 된다. 그것이 1993년 6월

에 있었던 세계인권대회의 참가였다. 세계인권대회에의 참가는 이전의 인권운동의 경험과는 다른 국내 인권단체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1980년대식의 인권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국제연대가 이제 소수 종교권 단체나 일부 변호사나 학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 인권단체들도 접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다.

물론 한번의 세례만으로 인권운동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은 아니어서 1980년대가 낳은 관행은 1990년대의 인권운동에 지속되어 새 국면을 열려는 운동과 길항작용을 벌여 나간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펼친 나름대로의 인권 계몽운동(팩스 소식지, 인권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이전의 인권운동에 대한 편협한 시야는 점차 넓혀져 갔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인권 상황에도 많은 변화의 조건을 형성했다. 정권 자체가 인권적인 의지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 피해자의 대표로 인식된 김대중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전의 정권에서처럼 물리적인 폭력은 최소한 정치, 시민적 영역에서는 현저히 줄어들게 했다.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은 미진한 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공약을 내걸고, 몇 개의 과거청산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 정도였지만, 그런 정권 담당자의 태도는 한때 인권을 유행어처럼 만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구적 자본주의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국내의 취약한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권으로서 세계금융이 요구하는 바 구조조정을 회피할 수 없었고, 많은 경우 이에 도전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차 없는 폭력이 가해졌다(롯데호텔 노동자 파업, 대우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 등).

이와 함께 북한과의 꾸준한 관계 개선 노력은 반공 억압구조를 한껏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를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과 국내 인권단체들의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은 이제껏 민간 인권단체들만의 영역이었던 인권문제가 국가제도 내에 포섭되는 상황을 낳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의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그 외에도 여성부의 신설,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들과 함께 국가가 민간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그러나, 아직은 형식적으로 제도권화되어 가고, 체제내적으로 포섭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상황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권운동의 유연한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곤층의 문제를 비롯한 사회권적 요구에 대해 인권운동은 대처해야 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몰고 오는 빈곤의 재생산 구조의 구축은 인권의 궁극적 전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전반적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인권운동이 새롭게 도전하고 확보해야 할 영역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권 운동에 대한 경험도 이론도 일천한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아직 이를 소화해내고, 자신들의 운동으로 만들어갈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사회권 문제에 천착하는 단체들이 늘고 있고, 사회권적 활동을 하는 진보단체 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으나,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이 아닌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권 영역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소수자 영역에서도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이 사회에 대해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들의 '차이'를 주장하는 인권적 목소리는 낮설게만 느끼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차이'를 인정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운동은 삶의 다양한 방식과 공존의 학습을 사회에 던져주고 있으며,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서 현실, 또는 미래 사회의 발전을 고려할 때 감안해야 할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와 함께 차이의 인권을 주창하는 단체들의 활동은 지금까지의 경직된 거대담론의 허점들을 공격하였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인권적 문제제기가 아직은 충분히 인권운동의 자양분으로 녹아들었다고는 단언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 어느 영역보다도 이를 먼저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는 가히 선구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1990년대의 인권운동은 변화된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성장, 분화를 거듭해왔다. 각각의 영역에서 각개 약진해온 인권운동은 개별 단체들의 역량을 뛰어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연대활동으로 해결해 나갔다.

3. 지난 10년 간의 인권 연대활동의 성과와 한계

지난 10년 간의 인권운동 진영의 연대활동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다. 그 일지라도 작성해 제시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필자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인권운동 단체들의 연대활동은 거의 일상적인 영역일 수 있다. 단체 자신의 고유 활동 외에 항상적으로 인권단체만이 아니라 각양의 민중단체, 시민단체, 정당 인권위 등과도 연대활동을 항시적으로 펼치고 있다. 주로 공대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안별로 이뤄지는 연대 활동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며, 각 단체의 연대사업을 맡는 활동가들은 이 공대위 사업을 책임 지기에도 힘이 들 정도다.

여기서는 지난 10년 간의 연대활동을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인권운동 연대활동의 한 상을 제시하고 그 한계도 노정했던 인권협이다. 둘째는 사안별 공대위를 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는 것이다. 셋째는 지금도 그 후과가 인권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공대위이다.

이들 세 가지 연대활동들을 보면 인권운동단체들의 연대활동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한계들을 대략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이들을 평가함으로써 이후 연대활동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① 인권협의 결성과 활동과정

국내에서 상시적인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는 지금껏 인권협이 유일하다. 인권협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소속단체가 명확했고, 단체들의 상시적인 협의와 집행위원회가 상당 기간 존속되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네트워크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협의 모태는 1993년 6월 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한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KONUCH)'였다. 이 인권대회가 한국 인권운동에 미친 영향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대한 것이었다. 대회 3개월여를 앞두고 결성된 이 공대위에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 KNCC 인권위,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8개 단체였고, 참관단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민족사진연구소 등이었으며, 창립 초창기였던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사무국에 간사를 파견했다.

이 공대위는 국제인권운동에 기여하고, 국내인권신장을 외국에 선전하고 그것에 대한 국제적 여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것을 개선시키고, 인권운동가들의 국제적 경험을 쌓고 국제적 연대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대회 참가 준비과정에서부터 인권활동가들은 이전까지는 무지하기까지 했던 인권의 이념과 국제인권보장제도 등에 대해 알아나갔다. 방콕 대회를 거쳐서 6월의 세계대회의 참가까지 한국의 인권운동은 사건 대응적이고 인권운동 자체에 대한 전문화와 학습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각했다. 이 대회를 통해 다른 나라 인권상황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다른 나라의 인권운동가들과는 이후에 교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어쨌거나 이 대회는 국내에서 정치범의 문제에만 한정되어 활동하던 당시의 인권운동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이런 국제규모의 회의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공동의 기구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다른 나라의 인권단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런 공대위의 활동의 성과는 이후의 국제연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나타났고, 조직적으로는 세계인권대회 참가 단위들이 1994년 5월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거치면서 6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KOHRNET)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상시적인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연대활동을 통한 성과를 맛본 인권단체들은 오랜 논의과정 끝에 인권협을 창설하였다. 인권협은 당시 국내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단체, 특히 KONUCH 활동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다. 총 10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협은 초기 논의 과정에서 상설적인 연합기구를 출범할 것인가, 아니면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대립하였다.

결국 상설적인 연합기구는 반대에 부딪혔고, 인권협안에 대한 협의, 국내외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배포, 인권교육, 국제연대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출범하였다. 참가단체의 사무국장급을 중심으로 매달 집행위원회를 열었고, 연도별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 운영비는 분담금을 책정하였고, 대표와 사무국은 매년마다 단체별로 돌아가며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이런 인권협은 초기에는 모범적으로 별 이견없이 운영되었으나, 점차 국내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만이 있을 뿐 실천이 없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단체별로 사안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으며, 각 단체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방안이 없는 속에서 협의 수준에서 그치고 공동의 실천은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실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대표격으로 공통적인 사안에는 인권협 단위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결국 나중에는 국제연대 창구 역할을 하는 정도로 활동이 미미해졌다. 인권협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변해 가는 인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1996년경부터는 활동정지상태에 빠져 들어갔다.

1999년 집행책임자회의에서는 인권협의 발전적 해소에는 합의하였으나 그 이후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그 해 12월 대표자회의에서 인권협의 명칭은 유지하면서 발전적 해소를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일부 단체의 반대 속에서 아직껏 정식 해소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초기 화려하게 국제무대에 등장했던 인권협이 결성 2년도 채 안되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논의는 있으나 이를 실천할 집행단위가 부재하였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각 단체가 소속단체의 일로도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서 각 단체의 관심사항에 대해 공동의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천할 단위로서 연대기구가 아닐 바에는 이에 대한 소속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인권협 경험은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협이 집행기구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뇌사상태에 빠졌다고는 볼 수 없다. 공동의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논의하여 실천하기에는 각각 단체의 인식의 수준 차이, 활동가 개개인들의 고민 부족과 그럴 수밖에 없는 단체 내부의 사정 등이 있었던 것이고, 아울러 인권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권운동을 포용할 만한 품도 적었던 때문인 것이리라 생각된다.

인권협이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간 이후 인권운동 단체들은 상설적인 연대기구 구성 논의와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현재까지 상설기구의 구성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게 된다.

② 사안별 공대위 활동-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이 대표적으로 공대위를 꾸려 공동사업을 진행했던 사안들은 공통의 사안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였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연대사업 단위가 없었던 적은 없던 것 같다. 1990년대 내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등장했던 공대위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활동했던 범투본, 1995년 전후로 활동했던 국가보안법 철폐범국민대책위, 1998년부터 2000년경까지 활동했던 국가보안법 철폐범국민대책위, 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인권운동의 절대적인 과제였고, 이 사안은 한국의 '진보'한다는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요한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나 공안정국이 조성되었을 때는 언제나 국가보안법 철폐(폐지) 공대위가 그 형태와 결합되는 내용, 단위는 달라도 존재했다.

언제나 같은 연대를 속에서 철폐를 외치던 운동진영은 1998년 두 개의 범국민대책회의로 나뉘지게 되며, 거기에는 일부 갈등도 포함되었다. 즉,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두고, 각각의 '철폐'와 '반대' 국민연대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는 인권운동진영 내부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였으므로 상당 기간 활동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분리는 전면적인 철폐나 핵심조항이 7조의 삭제가 우선이라는 전략으로 부딪힌 것이기도 하였다.

지금에 와서야 철폐나 반대나 하는 것이 그리 갈등까지 일으킬 사안이겠는가 싶지만, 어쨌거나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수준의 개정조차 되지 못한 채 흘러가 버렸고, 대신 상황만 점차 그 법적 위력을 상실해 가는 고사단계에 들어선 상황이 되었다.

과거청산 활동도 또한 1990년대 내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가는 가라앉고 다시 부상하는 식으로 이어졌다. 1995년까지는 5.18 광주특별법 제정운동이 핵심적인 사안이었지만, 5.18 이후 과거청산운동의 중심점 자인하면서 1996년에 결성되었던 과거청산국민위는 결성 초반부터 자신의 활동 영역을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막을 내렸다. 그 이후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제주 4.3특별법 제정 운동,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법의 제정운동이 이어졌고, 이들 운동은 특별법의 제정과 기구의 구성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뒤 주요 단체들까지 망라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 뒤에도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문제를 제기하는 공동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과거청산 운동기구에도 인권운동단체들은 그 비중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하게 참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공동 대책기구에서는 피해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동력을 유지하지만, 이를 전체 운동 진영으로 확산하는 데는 역부족이고, 다만 김대중 정부의 특성상 일부 제도권 내에서 해결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③ 국가인권기구공대위

사안별 공대위 활동에서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공대위다. 이 공대위는 단지 하나의 공대위 이상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비중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 공대위의 조직적 운영과 연대라는 측면에 한정해서 살펴보겠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993년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하고서다. 그 이후 인권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기구의 설립을 주창하였다. 그러다가 이 기구의 구성이 구체화된 것은 1997년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공약으로 들어가면서였다.

1998년 9월 인권단체들을 29개 단체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가 구성되었고, 1999년 4월에는 이 공추위가 74개 단체로 확대·개편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구성되었다.

이 공대위에는 인권협 참여 단체였던 이른바 ‘1세대 인권단체’만이 아니라 지역 인권단체들, ‘소수자’의 평등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 사회권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 반전 평화운동단체들이 망라되었다. 따라서, 인권운동진영이 모두 참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기까지 거의 3년 동안을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대항하여 집요하게 활동했다. 이 공대위는 주로 공동집행위원회를 통해 활동하였고, 사안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캠페인, 정치권 로비 등에 집중하였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 자체가 인권교육이라는 인식 하에 대중적인 설명회 등으로 몇 번 조직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법무부와 당시 여당안에 대한 발빠른 국회 대응 위주의 활동에 전력하였고, 사실 이런 대응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

어쨌든 이 공대위는 과거의 다른 공대위와는 달리 헌신적인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책임단위가 명확하였고, 나름대로 호흡이 잘 맞는 ‘환상적인 공대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결국 법무부 등이 껌대기 국가인권위 만들려는 기도를 차단하면서 민간단체가 법률 제정 과정을 주도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대중적인 투쟁 외에는 인권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 공대위는 과거의 어떤 인권 관련 사안 공대위와는 달리 전체 인권운동 진영이 공통의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막바지 정리 과정 단계 이전까지는 꽤나 잘 굴러가는 공대위였다는 점에서 이후 상설적인 인권연대 기구로 전환하는 문제도 일부 제기되긴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기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렇지만, 이 공대위도 보면 집행위원장 등의 회의와 대응 이외에 소속단체 활동가, 성원 등 인권운동 진영의 역량을 이 운동에 집중해내기는 불가능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제정까지는 힘을 모아 투쟁하였지만, 이후 통과된 법에 대한 평가에서 갈라져 2001년 5월에는 아무런 조직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34개 단체 참여)는 이전의 연대활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대거 빠진 상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 구성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자 했던 이 연대회의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를 둘러싸고 인권운동 진영은 분리되게 되며, 이 과정이 해소되지 못한 채 현재에까지 인권운동진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이런 갈등은 감정적인 면까지 개입되어 공방이 되고 있으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운동 진영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가장 크게는 이전의 신뢰감을 상실한 채 서로를 백안시하는 풍토마저 낳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활동가 사이의 관계 정립, 국가기구와 민간단체의 관계 정립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운동의 정당성 획득도 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이기는 하나 법률은 준비하였지만, 설립과정과 그 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준비할 역량이 부족하였고, 실제 준비작업을 갖지 못한 결과는 냉혹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인권운동 단체들은 새롭게 질서를 재편하여 민간인권운동의 제 모습을 찾아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변화된 인권지형 속에서 인권운동은 새로운 모색기, 그러나 시간이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는 상황에서 인권운동진영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결해야 하는가를 묻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외의 연대활동 중에 주목해야 할 사업들은 더 많은 것이다. 가령 유엔 사회권조약 반박보고서 작성 등 유엔 관련 활동이 여전히 국내 인권운동으로 이어진 경우들은 국제연대와 국내 인권활동이 분리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델일 수 있다. 또, 2000년의 1년여 지속된 아셈 인권분과 활동은 참가 단체의 활동가들이 인권단체 네트워크에 모두 동의할 정도로 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생략하기로 하자.

4. 10년의 평가와 향후 연대활동의 과제

인권협부터 국가인권기구공대위 활동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인권단체들 내부에서는 정신 없이 터져 나오는 인권사안들에 그때그때 공대위를 만들어 대처하느니 상설적인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지난해의 부평 대우자동차 사태 공동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상설적인 네트워크가 제안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안만 있지 우리는 여전히 사안별 공대위에 길들여져 있고, 이런 공대위의 허망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찌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많은 공대위가 뛰는 한 두 단체의 성실성에 기대거나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흐지부지되기 십상인 유령 조직화될 운명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런 공대위 운동은 때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별로는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급조하였다가 유지하는 데 급급한 임시조직으로 언제까지 우리의 인권운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동을 조직할 수 없을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를 모니터하는 일만도 한 단체로는 벅찬데 무슨 뽕족한 방법은 없을까, 거대한 시장과 권력의 재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권 목록의 폭발적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정보를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여 자신들의 사업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단체만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인지 이후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하는지, 현 시기 올바른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할 단위는 필요하지 않을까 등등의 문제 제기 속에서 우리는 공대위 운동으로는 넘지 못할 상설적인 연대기구의 목마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의 연대활동, 특히 인권협 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① 집행력의 부재다.

인권협이 안정적인 집행력을 갖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였다. 모든 단체가 일상적인 사업 외에 새롭게 일거리를 떠안게 되는 점을 부담스럽게 여기에 되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간사단체도 최소한의 부분에서 일을 처리하려 했다. 자기의 단체에 속하지 않는 연대기구 소속의 사무국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집행력의 부재로 인해 논의만 하고 실천은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인권협에 소속되어 있던 단체의 경우는 이른바 1세대 인권단체들이었다.

이들 단체들은 스스로 인권운동을 협소하게 규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역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인권운동진영 내에서도 그 존재를 부정 받게 되었다.

③ 인권협은 대표적인 인권단체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정책의 생산,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그 활동방식, 그 재원까지도 민변과 같은 전문가 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 또한, 국내 사안에 대한 조율과 공동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제연대 편향의 활동을 하게 되어 많은 단체들이 소외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던 점도 문제였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상설기구가 필요한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어느 때보다도 상설적인 연대기구는 더욱 절실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인권운동진영은 이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침식하여 들어오는 인권영역에 대해 방어하지도 그렇다고 무작정 협력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은 목소리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지금 정도의 목소리로는 귀기울일 상대가 없다), 일부 행태를 고발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 국가기구는 그 나름의 작동 시스템이 있으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의 결속과 조직적 대응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고 전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탄생하는 다양한 영역의 수많은 작은 인권단체들, 지역의 단체들의 존재는 상설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각자 개별적 활동으로는 그 주장을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매번 공대위를 만들어 수많은 회의마다 쫓아다니기에는 고통이 따른다.

또한, 지금의 변화된 상황 하에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운동질서를 재편할 필요도 있다. 인권이 갖는 특성상 사회단체들을 아우를 수 있으며, 인권의 개념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운동의 이념도 재창출할 수 있다. 진보운동단체와 인권단체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상설적인 인권연대기구는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 필자는 생각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한 두 가지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모범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다.

구체적인 단체들의 현실 수준에 맞게 참여토록 역량을 배분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에 눈에 보이는 국민 일반도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사업 과정에서 신뢰도 회복하고,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획득해야 한다.

② 인권운동의 전투성을 회복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때까지는 인권운동이 나름대로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 후 인권운동은 발빠르게 문제를 제기하고, 몸을 던져 싸우는 모습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왜 검찰의 고문 문제가 터졌을 때 인권운동은 성명서 발표에 그쳤을까. 이전처럼 조사한다고 덤비고, 검찰청에 가서 항의시위도 하고, 피해 신고센터라도 만들어내려 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한국 인권운동의 자산인 전투성보다는 합리적 로비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전투적으로 싸우며, 일로써 문제를 제기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꾸준히 만나야 한다.

다양한 생각과 방식을 갖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고립감 속에서 자신을 검증할 방법도 없이 자기 단체의 일에 매몰되어서는 힘을 모을 수 없다. 서울은 지역으로 지역에서는 서울로 오고가며 만나 서로의 운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하고 일을 도모할 때에 연대의 토대는 만들어질 것이다.

④ 사업을 주도하려는 주도권, 자기 단체 중심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인권운동 진영에 이런 경향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이는 연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단체는 결국 자신의 단체를 운동진영 내에서 도태시키고, 운동을 갉아먹는 해악을 끼친다. 운동 진영 내에 이런 풍토가 만연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원칙을 설정하고 논의가 끝났으면, 작은 일이라도 책임지는 모습 속에 서로 건전한 비판과 격려가 싹튼다.

⑤ 그러나, 연대하되 분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연대기구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분파가 입장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처럼 한 목소리와 하나의 경향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연대의 폭과 깊이를 스스로 제약하는 꼴이 된다. 진보와 보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 이뤄지는 연대라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인권운동이 연대로 더욱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진보운동단체에게는 인권적 마인드를 수혈하고, 인권운동 단체들은 진보운동의 마인드를 수혈받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끊임없이 체제내화의 유혹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진보적 마인드를 갖는 일은 운동의 원칙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진보진영과의 교류 속에서 인권운동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상호 동화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⑥ 이 연대 활동에는 소수의 영역의 단체가 아니라 인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연대기구가 스스로 인권 개념을 협소하게 만들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원칙을 갖고 1년 간 연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전체 인권운동의 진영의 신임을 받는 단체가 나타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단체를 중심으로 연대는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 연대는 당위가 아니라 인권운동이 살 수 있는 운명적인 문제임을 자각하는 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마지막으로 제안하면서 줄고를 맺는다.

(필자가 처한 조건에서 어렵게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공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글을 쓰자니 자료도 충분히 챙기지도 못하였고, 생각도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글을 여러분의 풍부한 상상력과 운동적 감수성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토론 발제2

인권운동 10년의 연대활동 평가

- 새로운 인권운동 연대질서를 위한 단상 -

이 창 수 (새사회연대 대표)

1. 천 : 인권운동 10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권운동의 역사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권운동은 당시의 역사속에서 평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로서 재해석되는 일반적인 사회과학적인 현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운동에 관한 역사적인 서술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엄존했던 사실들을 단순 병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로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인권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운동적인 실천을 전개했다는 전제를 형식적이거나 검토해야 한다. 10년 과정 가운데 절반은 인권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운동의 한 지류로서 또는 인권운동을 하기 위한 주체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운동의 연혁적 시원이 10년 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어떤 '주의'나 '방향'을 말할 때는 사회적인 동의 또는 세력화가 어느 정도 가시권화에 들어서야만 의미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미있는 흐름을 잡기까지 많은 운동흐름이나 단체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명멸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맹아기적 준비단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무중력 상태로 사태를 보는 오류를 범할 것이다.

인권운동 분야에서의 연대활동도 마찬가지다. 인권운동의 맹아기 때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연대 운동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맹아적 연대 기운은 일정한 법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먼저 인권운동의 연대적 속성을 파악하고, 그 속성의 구체적인 표현태인 연대활동을 보아야 한다. 연대적 속성을 파악하지 않고는 연대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협력'과 '협조' 또는 '공조'라는 말과 혼돈을 일으키고 결국은 연대정신의 본질은 '사안별 공조'로 변질되거나 혼용되어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10년의 인권운동 속에서 연대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주체 즉 개별 단체나 독립적인 요소(factor)들의 자기 발전 단계를 검토해야 한다. 주관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인권운동의 지평의 대열에 함께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측면이 인권운동 또는 그 운동의 연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적인 환경이다. 주관적 오류나 과도한 목적적인 활동을 통해서 쫓기는 '타조의 머리 박기식'의 시각으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유의미한 가치인 실천의 무게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는 이런 세가지 측면 즉 연대의 개념과 성격, 인권운동의 위상 그리고 시대적 요구라는 차원에서 인권운동의 연대활동을 평가하는 기본틀을 삼을 것이다.

이런 기본틀에서 우리는 그 연대 방식으로 표현된 형태들을 대입시켜 볼 것이다. 즉 연대의 수위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협의체', '연합' 또는 '단일화(통합)' 그리고 요즘의 유행어처럼 되어 버린 조직의 한 형태로서의 '연대'를 가늠할 것이다. 또한 연대활동을 범위를 규정하는 '총체적·전면적 연대'나 '국지적·사안별 연대'나의 측면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연대 기간의 장단에 따른 '일시적·전술적·통일전선적 연대'나? '장기적·전략적·통일적 연대'나?의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의 내용과 방향'을 가늠하는 연대의 기준을 대안으로 검토할 것이다.

지난 10년의 인권 투쟁의 역사는 바로 앞으로 10년을 예상하는 발자취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과거의 10년은 미래의 10년을 잉태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하려고 한다.

2. 지 : 인권운동 10년의 역사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2.1 연대적 속성

연대라는 속성은 한 사회의 소수자들의 언어이자 실천 개념이다. 즉 주류집단 또는 세력에게 연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투쟁의 대상보다 약한 쪽이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세력은 즉 한 사회의 주류들 간에는 '협력과 경쟁'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연대는 연대의식에서 발현되는데 그것은 '하나가 다치면 모두가 다치는 것' 또는 '하나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라는 속성에서 발현된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에 편입된 세력을 연대의 대상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급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기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는 경우도 연대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그것을 패권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인권적 연대성을 갖고 연대활동은 크게 두가지 양상을 띤다. 90년대 의사민주주의세력인 김영삼 정권하에서 벌어진 것으로 제도 개선에 중심을 둔 인권투쟁이었다. 80년대 반독재 투쟁을 벌인 것을 편의상 '민주주의' 투쟁이었다고 전제한다면 인권운동의 역사속에서 연대적 속성은 의사민주적인 제도 또는 파시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연대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물론 이때 제도에 편입된 세력은 당연히 연대할 대상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야합이라고 한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이런 야합은 없었다. 두 번째 양상은 김대중 정권 시기에 일어난 '사회구조적인 변화' - 세계화와 신자유주

의 - 에 반대하는 지점에서 연대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전자의 시기에는 주로 제도권에 대한 견인과 협력하에 인권운동이 전개되었다면 후자의 시기에는 제도권에 편입되어 가는 세력과의 연대는 사라지고 새롭게 형성하는 세력과의 연대가 강화되었다. 적어도 초기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인권영역이 아니었던 고용, 건강, 교육 문제가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연대의 가능성을 실천하거나 부분적인 실현을 보았다.

2.2. 인권운동의 운동상의 지위

인권운동은 전반기에는 저성장되었다. 당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구 공산주의권'의 몰락하고 따라서 '이데올로기적·계급적 운동지형'이 현실운동에서 퇴조되는 과정에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두 운동 흐름이 출현했다. 이것은 하나는 신사회운동 즉 시민사회론의 부각이다. 경실련, 참여연대의 흐름이 그것이다. 또 다른 흐름은 과거 운동의 보완적 성격에서 출현했는데 대부분이 다양한 대안 시대에 그치고 말았다. 다만 인권운동만이 초기의 몇가지 오류를 극복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운동으로서의 인권'이 운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세력의 문제에 착목한 것이 아니라 운동의 내용과 비전에 착목했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민중운동과 민족운동은 주로 반체제적인 성격을 갖는 세력의 집합이었지만, 이데올로기 대립 전선이 국제적으로 퇴조하면서 이를 대체할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인권운동은 이데올로기적 전화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체계로서 준비하고 예비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권운동 전반기에 이미 우리나라 인권운동은 분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어떤 면에서 인권운동이 하나의 운동체계로서 가능성이 불분명했다. 여기서 민가협과 민변 등의 세력은 인권운동 세력이라기 보다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한 축을 담당했다. 물론 민주화의 내용에 인권적인 내용이 접하는 지위가 있다. 이 시기에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국제적인 인권지표를 전수받아 적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국제연대활동은 주로 유엔의 문헌을 번역하고 학습하거나 의사민주주의의 혹독한 공격에 지원을 요청하는 정도였다. 이런 맥락에서 최초의 연대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비엔나 인권대회'를 매개로 인권적인 연대가 최초로 실현되었다. 당시의 주된 과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하지만 인권운동 후반기에는 양상이 좀 달라지면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구조조정과 금융위기의 기류속에서 급변하게 되었고 심정적으로 과거 '자유권 투쟁'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세력의 집권은 새로운 양상의 연대를 필요하게 되었다. 즉 집권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대활동

이 본격화되었지만, 또한 사회적 배제 집단인 빈민과 노동자, 실업자들 그룹과의 연대활동이 발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형의 질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실업자 및 도시빈민들의 자기 권리 의식의 약화로 질적인 분화의 과정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결국 인권운동 후반기는 결국 법제정 투쟁으로 집중되었는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같이 반과시증적인 잔재 청산을 위한 투쟁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대활동의 축이 그 주축을 이룬다. 물론 국가보안법 투쟁도 기존의 체제변혁적인 투쟁에서 '법개정' 운동으로 치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인권운동의 지위는 결국 반과시증적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법제도 개선 투쟁의 도덕적 근거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인권운동은 이제 발아한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운동현실은 사회적 권 영역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3.3 인권운동외적인 환경 : 시대적 요구

김대중 정권의 출현은 인권운동에는 새로운 고민을 안겨 주었다. 즉 자유권 중심의 확고한 인권의식을 소유한 김대중씨와의 관계 설정이 본격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능성과 함께 그 구체적인 실현 경로에서 단계적인 폐지론(이른바 개정론)에서 전면적인 폐지론(이른바 철폐론)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인권운동도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인권운동 외부 세력인 민주당 세력의 힘의 한계에 의존하게 되어 '개정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권운동은 사실상의 연대활동이 국지화되었다. 즉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 한 사회의 체제의 문제인데, 이것을 철폐하기 위한 경로상의 차이는 주로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부터 결국 인권운동은 전통적인 자유권 투쟁의 협의체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활동이 사실상 휴면기에 들어간다. 이후 전면적인 인권운동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은 김대중 정권하의 마지막 사안별 연대체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의 마감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연대질서는 소멸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도 고용유연화전략에 포섭된 세력과 배제된 세력 사이에서 인권운동은 자기 방향을 잡기 위해서 관조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타영역과의 사안별 공조 또는 동거실험이 감행되었다.

3. 인 : 인권운동의 연대활동 방향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인권운동은 사안별 연대지만, 인권운동의 질적인 성장으로 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것은 바로 법제도적인 인권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사회적 권리를 중심으

로 하는 흐름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 결국 이 두 세력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 인권단체연대회의'에 참여 여부로 일차적으로 드러났다. 이 연대회의는 결국 자기 목표를 다하지 못하고 좌초하게 되지만 결국 법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운동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는 세력과 신생의 인권단체 그리고 새로운 인권영역으로 나타나는 제흐름이 공동의 흐름을 형성의 단초를 마련했다. 연대회의의 주요한 실패 원인은 이런 주된 흐름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단기적인 전술로 모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연대활동은 질적·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사회권과 자유권'의 '화학물로서의 인권운동'을 방향으로 새로운 인권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운동의 연대활동은 이런 영역에서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보론 : 가칭 '한국인권단체포럼'의 설치는 어떤가?

세계 사형제도 현황과 한국의 사형폐지운동

(2002년 4월 현재)

오 완 호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국장)

1. 사형제도 폐지국 : 총 111개국 (2001년: 108개국)

-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74개국
-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 15개국
-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에 있어 폐지 - 22개국

2. 사형제도 존치국 : 총 84개국

3. 2001년 한해동안의 사형 선고 및 집행

- 사형선고 : 총 68개국에서 5,265명
- 사형집행 : 총 31개국에서 3,048명 (2000년도 1,457명)
- * 전체 사형집행 중 90%가 중국(2,468명), 이란(139명), 사우디아라비아(79명), 미국(66명)에서 있었음.

4. 미성년범법자에 대한 사형

국제인권협약은 범행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미성년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금하고 있지만, 현재 110개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으로는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콩고민주공화국과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총 7개국이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왔다. 이 가운데 미국이 총 1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한해동안에는, 이란에서 1명, 파키스탄에서 1명, 미국에서 1명 등 총 3명이 사형집행되었다.

5.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많은 범죄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앞으로 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6.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사형제도 폐지국들의 최근 범죄발생율 수치로 미루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무런 해악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율이 가장 높던 1975년도 -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전 - 에 인구 10만명당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사형폐지 후 23년이 지난 1999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1975년도에 비해 43%나 감소한 것이다.

7. 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99명의 사형수가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지 수년이 지나 집행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혹은 경찰의 실수, 믿을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자백, 그리고 변론의 부족 등으로 오판을 받게 되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리안 주지사는 2000년 1월에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했는데, 이는 13번째 사형수에 대한 재판이 오판이었음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었다.

8.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 조사

· **캐나다** : 토론토의 한 신문사와 CTV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 몇 년간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에 성인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형제도에 찬성했는데, 이는 1995년도의 69% 그리고 1987년도의 73%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들은 대부분이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반면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들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찬성했다.

· **미국** : 워싱턴 포스터와 ABC뉴스의 요청으로 펜실베이니아의 언론사인 ICR이 지난 4월에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63%였으며, 이는 5년전의 77%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사형제도와 감형없는 종신형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46%만이 사형제도를 지지했다. 그리고 51%의 응답자가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싱가폴**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Think Centre”라는 인권단체가 6월 1일부터 11일 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1,134명 중 357명(31.5%)가 사형제도 존치를 그리고 778명(68.5%)가 폐지를 주장했다.

· **한국** : 11월 4월 조선일보와 엠비존이 공동으로 실시한 휴대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한국정보서비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4%가 그리고 199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20%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9. 한국의 사형제도

2001년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법안에 지지 서명을 하여 2001년 말 동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되었으나, 현재까지 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사형집행은 없었다.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명백히 실제적 모라토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형선고는 계속되었다. 2002년 현재 사형수는 최소 53명으로 추정되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재판 진행 중 경우를 합하면 약 7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형수들은 형을 선고받은 첫 해 1년 동안은 항상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이다.

10. 한국의 사형집행 추이

해방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형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90년대 중반 들어 사형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집행건수는 총 96명으로 연평균 9.6명이다.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의 집행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1. 한국 사형폐지 운동 현황

-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국가 대부분과 화교국가 대부분이 유교 및 회교 전통에 근거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음.
-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단체로서는 한국사형제도폐지협의회, 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최근 개인적 차원의 동호회모임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2001년 전체국회의원 273명중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서명하였으나, 법사위에서 토론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인권단체의 전화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법사위원 12명 중 4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8명이 반대하고 있음.
-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권에서의 대규모적인 사형집행이 우려됨.
- 현재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런던 국제사무국과 함께 EU 국가를 통한 국제적 압력을 조직중임.
- 현 과제 설정

- 1) 사형수를 무기수로 전원 감형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성탄절 사면에 이것이 포함되게 하는 압력행사 중임.
- 2) 사형확정 후 6개월 안에 사형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465조를 최소 10년 후 집행한다는 것으로 대체하는 법안 개정안이 신계륜의원의 발의로 법사위에 상정 될 것임.
- 3) 단기적인 사안으로 사형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의 설정이 필요함.

소주제토론2 ▶ 인권교육의 전략

인권교육의 전략

- **참여단체**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운동 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장애우권익지킴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안산노동자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추모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새사회연대, 천주교정의평화구현실천단, 천주교인권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총 17개 단체

● 인권교육 왜 시작했나 / 왜 시작하려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엠네스티 한국지부 전교조 사랑방 평화연대 동인련 장애우 외노협 민주법연 다산 안산 인권실천 추모연대 한동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새사회 정평 천주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르니까(침해방지) / 확대(홍보) / 소통(주입식X) 의무(당연) 활동가 재생산 / 인권감수성체화 인권실현 방법 알리기 / 자부심(자존감·존중심) 재발방지 무지 / 차별 / 상호이해 지적유회 극복·투쟁의 역사 알기, 합의도출과정 이해 확산 / 사회적 약자 권리 투쟁 / 가해자 깨우치기 알아야 대응 / 행동 / 가치이해 야만·폭력 극복 희생자 알리기 존재인식 공부 / 사업 인권의식 함양·확대 소중함 공감대 권리찾기

●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예정) 있나! / 필요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대학생, 장애인, 아동, 활동가, 교사,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사, 인권교육가, NGO 활동가, 성적소수자,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자, 회원, 시민(비회원, 일반인 누구나), 외국인 노동자, 활동가, 지역주민, 교사, 대학생, 학부모, 초·중고, 빈민지역 아동, 장애인

● 교육이 필요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제, 공무원, 노인, 장애인관련시설 관리 책임자, 법집행 공무원, 정치인·법조인·CEO, 교사(교장,교감), 대학 교원, 정신지체아우, 재소자, 고용주, 이익단체 직원들, 군인, 교회 내 성적소수자, 노조원, 진보인사, 극단적 호모포비아, 동성애자 가족, 성교육 교사, 학교, 언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부(권위외의식), 불필요, 인적자원부족, 필요성 못느낌, 무관심, 무지, 경계심, 입시·경쟁교육, 방법론/접근권, 동기유발, 동원 어려움, 지적오만

●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그 방법이 효과적인가!

<p>게임, 연극, 역할극, 3분 발언대, 시청각 자료, 강연/강의, 독자투고·언론, 사례분석, 프라이드 프로그램, 캠프, 상담사례, 발표·토론, 그리기, 만들기, 문화제(인권콘서트), 체험, 공동조사/탐방, 교육자료 적소에 비치, 분위기 조성, E-mail, 웹진, 소식지, 개별 교육</p>	<p>강연·강의 - 직접 대면, 이론.사례 발표, 토론(지식의 구체성 향상) 의 전에 잠깐 브레인 스토밍과 같은 시간을 가지면 강의 효과가 커진다.(예-모의법정)</p> <p>언론 - 성명서 내용에 교육 내용을 포함</p> <p>프라이드 프로그램 - 솔직하게</p> <p>게임,연극,역할극 -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p> <p>체험 -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침</p> <p>문화제 - 공감대 형성이 잘 된다, 반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p> <p>=>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 할 때, 참여자들이 본인의 경험에 기초했을 때 그 효과가 크다</p>
--	--

ADIDAS

Action - 다같이 참여
Discussion - 토론
Input - 정보 제공
Deepen - 심화
Analysis - 분석
Sum - 종합

● 주로 이용한 교재 / 참고 자료는 !

<p>자체교육자료 사안에 따라 창작 인권교육 사이트 이용 인권활동가 글 유엔 자료 국제 워크샵 자료 외국 교재 기사 판례 인권하루소식 백서 관련서적 영화 외국 사이트 Shopping List 서적 단체 간행물 갈등해결 매뉴얼 진행자를 위한 매뉴얼 집단 상담 프로그램 새사회연대 자체 제작 발간 예정 중고생용 매뉴얼 소식 모음 장애인연맹</p>	<p>힘은 들지만 가장 좋다</p> <p>주제별 자료실</p> <p>엠네스티 자료 등</p> <p>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 토론</p> <p>역사속의 성적 소수자, 억압의 역사와 사슬끊기, 커밍아웃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인걸 Act up, HRE site</p> <p>민주주의 시민 교육 방법론</p> <p>저학년을 위한 인권교과서 고학년을 위한 인권교과서</p> <p>DPI 장애인 당사자 운동 관련서적</p>
---	---

생산되어서 공유되는 단체보다 활동가가 궁여지책으로 자체 제작. 앞으로 공유의 필요성.

● 참여하지 못한 타 단체 활동 소식. 인권단체 이외의 인권교육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p>성수동 아동학대 방지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볼론티어21 ARR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지체 특수 학교 - 아동인권교육 실시, 권리찾기 게임, 성보호하기 프로그램 진행 - 장애우 권익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도 있다. - 교육방법 교육, 1년 2회 민주시민교육(2박3일 15만원) - 올해 즈음 한국에서 열릴 예정 아시아지역인권교육센터, ARRC가 조직하는 단체에 좋은 곳이 많다 이곳에서 자료가 나오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국제이해 교육원 - 경찰 교육 실시 -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방법 공유하고 배울 필요 - 공무원 대상 교육 - 1~2시간 1회성 교육 시범교실 실시중 내년부터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 경찰은 호의적이나 군은 무관심. 경찰대, 군사관학교등 국가 전문 교육 시설에 수강과목이 생기는 것을 목포토하고 있음. 인적자원에 있어서 고민
---	--

● 협력을 원한다면 어떤 공동의 과제가 있는가!

<p>인권교육 지도자 워크샵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공동 매뉴얼 통합워크샵 공동자료실 운영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견인 대안교육으로서의 인권학교 설문조사 공유 소수자 관련 사회적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연대 확산 / 권리 보장 / 활동가 교육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회원 대상 - 구조적, 제도적
---	--

● 인권교육의 전략 소토론에 대한 평가는 !

- 건설적인 모습이 좋았다. 다음에 2회 활동가 대회가 열리게 되면 다시 참석하게 될 것 같다. 다음 자료보단 실제 경험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 혼자서 산발적으로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공유를 통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그려볼 수 있어 좋았다. 자료축적, 정보공유 측면에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

- 스스로 제한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 각 단체의 노하우가 공유되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어 좋았다.

- 교류의 단추가 될 수 있는 자리인 듯 해서 좋았다

- 차이를 극복하려는 모습들이 좋았고 내년을 여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 서로 친구가 되면 서로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 대중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에서 대중의 정의와 대상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 다음 대회가 이번대회의 연장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논의되고 토론되었던 내용이 내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내용이 공유되고 발전적인 토론 주제로 다음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많이 풀어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다음 대회에서는 이 내용들이 심화되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을 기여해 주어서 좋았다.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공유하려는 모습들이 좋았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이해를 위한 글1)

최은아,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시작하며

이 발제는 인권의 역사 속에서 사회권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 체계 안에서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의 성립과 사회권의 주요 권리항목을 소개하고, 사회권에 대해 그동안 왜곡되어 온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살펴본다.

■ 인권의 역사 속에서 사회권의 등장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다. 이것이 바로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 Libertatum)이다. 대헌장은 성문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헌장 이후,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의 권리였던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입헌주의적 전통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1. 근대시민혁명과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

17,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자연법사상,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신분적인 영예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념 등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라는 개념이 명백하게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자연법²⁾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연적 권리로서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시했다. 로크로 대표되는 근대 자연법학자들이 재산권을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천명한 것은 당시 전개되고 있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소유양식을 정당화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는 이론적 근거가

1)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리한 ['인권개념과 역사' - 송실대 교육안]과 [사회권규약해설서]에서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 자연법사상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근대적인 의미의 자연법사상은 자연을 지배하는 질서를 신적 질서가 아닌 인간 자신의 이성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대적 자연법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부여된 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올바른 자연의 질서, 즉 정의(正義)의 법칙을 의미한다. 결국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에 따라 정치사회가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정부는 인민의 수탁자(受託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민의 동의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인민은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

특히 루소(Jean-Jauques Rousseau, 1712-1778)³⁾는 인민이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 정부가 일반의지에 반하여 행동할 때 정부를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제에서는 단지 지배의 대상이었던 국민이 이제는 인권의 주체이자 국가권력의 원천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적 압제에 반기를 들고 신(神)중심적, 신분질서중심적인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근대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를 인권의 보장에서 찾음으로써 근대적인 인권보장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평등과 의회민주주의의 원리가 발전, 정착되기 시작했다.

2. 드러나는 모순 - 자유와 평등의 실질화를 위한 투쟁

그러나 근대시민혁명이 가져온 인권보장 체계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 근대시민혁명의 핵심적 이념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끝난 이후 자유와 평등은 상당부분 굴절 또는 축소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근대시민헌법은 무엇보다도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였고 '평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을 뿐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자유' 중에서도 시민계급이 철저히 옹호한 것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계약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였을 뿐, 일정한 재산을 갖춘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제한선거제도⁴⁾를 유지하는 등 정신활동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참정권 등 다른 자유의 내용들은 여러가지 법률을 통해 제한하였다. 특히 주권의 소유와 행사를 분리하는 국민주권의 원리⁵⁾에 기초한 근대

3) 루소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루소는 사적 소유의 출현으로 인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연상태가 종결되고 불평등한 사회상태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자연상태 말기에 출현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에 기초한 사회상태로의 이행'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계약에 따라 각 구성원은 그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소는 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한 로크와는 대비된다.

4) 당시 프랑스에서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직접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국민이라는 '납세자주주론'(納稅者株住論)에 따라 대다수 노동자들과 농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층 부르주아계급에게조차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5)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헌법원리이다. 이때 국민은 추상적, 관념적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사결정능력이나 집행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주권의 소유는 국민이지만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에

적 정치체제는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대다수 민중은 인간다운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근대시민혁명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선언된 권리가 실제적으로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도식 하에 부르주아계급 남성이라는 "능동적 시민"의 권리를 인정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근대시민헌법이 오직 부르주아계급의 남성들에게만 권리를 보장해주었던 역사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무한한 확장에 따른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인간적 노동조건,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아동노동·빈곤·질병·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평균수명의 저하, 문맹(文盲),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철저한 자유방임적 자세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쌓여가고 시장의 가혹한 착취가 자본주의 체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까지도 위협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되면서,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과 강력한 국가가 요청되었다.

3. 사회권의 역사적 등장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이미 민중들은 부르주아하고는 다른 인권구상을 가지고 혁명무대에 등장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자 했다. 이들이 표방했던 인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닌 정신활동과 신체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 혹은 시장의 극복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확장하는 것 ▲시민의 권리 행사를 가능케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압제에 대한 봉기를 인정하는 것 ▲형식적인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다. 프랑스혁명 후반기에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평등한 노동의 의무를 요구하게 됐다. 이러한 민중의 노력은 즉각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부르주아에 의해 묵살되었지만 이후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을 비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파리꼬문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역사상 최초의 민중권력이었다. 파리꼬문이 출현한 배경에는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과 동시에 나타난 비참한 사회관계·계급관계가 놓여있다. 저임금·장시간·평균수명의 저하·실업으로 인한 빈곤·아동노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전면적인 투쟁을 감행하였는데 그 투쟁의 도달점이 1871년 파리꼬문이다. 파리꼬문의 인권보장은 '헌법'이나 '인권선언' 등 체계적으로 정리되진 못했으나 그 양과 질에서 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 내용은 ▲절대적 자유의 보장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원적으로 변혁함으로써 민중의 생활을

반해 루소가 적극적으로 제기한 인민주권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민이 주권의 소유와 행사의 주체가 되며, 따라서 법률의 제정과정이나 대표자의 임명과 해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인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고 대표자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의 저지와 인권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杉原泰雄, 『인권의 역사』, 한울, 1992, 48-49쪽.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교육을 중시하여 무상성의 원칙에서 전면교육과 직업교육의 확대 ▲인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하여 '주민자치' 중시 등이다. 파리로문은 착취계급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며 그들의 인권구상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공장입법을 개선하는 등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자본가쪽은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회피하고 체제내로 끌어들여 안정된 이윤추구를 확보하느나하는 새로운 대응에 부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근대 시민헌법적 인권보장의 형태를 수정하여 자본주의 틀 안에서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이끈 혁명은 사회적 평등원칙에 기초하여 경제적 보장을 위한 권리를 혁명의 중요 결실이며 소비에트의 기본적 시민권으로 선언하였다. 1917년 12월 11일 러시아는 실업보험을 수립하였고, 29일 현금질병급여, 출산 및 장제급여 및 의료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후 1918년까지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들이 법령화되었다.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시초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19세기까지 일관되게 견지했던 자유방임적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에 대해 일정하게 개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 1919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19세기 후반 사회권은 자유권보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 발견된다. 19세기 후반 국내적 차원에서 노동조건 향상의 국제적 협력의 요구로 이어졌고 그리하여 이 영역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위한 첫 회의가 1890년 독일에서 열렸다.

191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획기적인 발전은 국제노동기구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설립은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국제노동기구는 ILO협약들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최저기준을 많이 확립해왔다. 예를 들어, 집회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강제노동금지, 최저노동연령, 근로시간,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산업재해, 실업 및 고령보험,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금지 등.

6) 바이마르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에 따라 독일제국이 붕괴된 후 1919년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제정된 독일공화국헌법을 말한다.

▲ 1930년대 세계공황에서 제1, 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고 난 후였다.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전체주의의 출현이 끔찍한 세계대전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황폐함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로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4.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및 선포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창설된 유엔은 그전까지 국내문제로만 인식하던 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이 국제적 과제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계인권법의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엔에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유엔은 1946년에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만들면서 세계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서형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다가 결국에는 '선언'과 '조약'의 별도 문서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여 1948년 12월 10일 선포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권의 보편적 이념을 구현한 최초의 예라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식에 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규범적인 국제문서에 불과하다는 점⁷⁾,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의 내용이⁸⁾ 15개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내용은 6개 조항에 불과하다.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성립과 발전

7)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오늘날에는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문서로서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의 지위로 격상되고 있다.

8) 전문과 총 30조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 중 자유권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3조 생명권, 4조 노예제도 금지, 5조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 7조 법 앞에서 평등, 9조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의 금지, 10조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11조 무죄추정과 죄형법정주의, 12조 사생활의 보호, 13조 거주·이전의 자유, 14조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9조 의사·표현의 자유, 20조 집회·결사의 자유, 21조 선거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 등이다. 반면, 사회권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22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3조 노동할 권리,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결성권, 24조 휴식·여가의 권리, 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및 사회보장의 권리, 26조 교육받을 권리, 27조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등이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기 위한 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초안 작업을 준비한 인권위원회는 자유권을 중심으로한 인권규약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반발로 인권규약초안에 사회권을 넣도록 하는 결의를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게 된다. 이어 또 문제가 된 것은 사회권과 자유권을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지 두 개의 분리된 규약으로 나눌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유엔총회의 결의는 하나의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양자를 별개의 규약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결국 유엔 차원에서의 여러 논의 끝에 1951년 제6차 유엔총회는 새로운 규약을 두 개로 분리시키고, 인권위원회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규약 등 두 개의 국제규약의 초안을 준비하도록 결정하였다.⁹⁾

당시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는 사회권과 자유권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회원국들 사이에는 두 권리 범주의 속성과 권리실현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사회권과 자유권을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자는 것에 찬성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¹⁰⁾은 인권이란 몇 가지 범주로 명확하게 나뉘거나 가치의 서열을 따질 수 없고, 모든 권리는 동시에 이행되고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권 없는 자유권은 순전히 명목상의 성격을 띄게 되고 자유권 없는 사회권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권리를 포괄하는 하나의 규약이 필요하고, 당사국에 의해 엄격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¹⁾

반면, 사회권과 자유권을 두 개의 분리된 규약으로 만들자는 것에 찬성하는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은¹²⁾ 자유권은 강제할 수 있고 재판가능하며 즉시 이행이 가능하지만, 사회권은 강제적인 성격 없이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 즉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권리고, 사회권은 국가가 이행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권리라고 보았다. 두 인권범주가 발생시키는 국가의 의무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분리된 기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국제인권조약이 사회권과 자유권 두 개의 규약으로 나뉘어지는 데에는 미국의 영향이 컸다. 인권위원회의 단일 규약안을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미국은 만일 사회권의 내용을 자유권에 포함시킨다면, 국가가 경제나 정치적인 일에 간섭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 다른 한편으로 단일 규약안을 지지했던 사회주의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무려 3년에 걸친 논쟁과 18년에 걸친 규약초안 작업 끝에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사회·문화

9) たばたしげじろう, 1994, 53~55쪽 참조.

10) たばたしげじろう, 1994, 52~53쪽.

11)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1996,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Clarendon Press · Oxford, 257쪽 참조.

12) たばたしげじろう, 1994, 52~53쪽.

13)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1996, 260~263쪽.

14)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1996, 260~263쪽.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분리해서 채택하였다.

사회권과 자유권을 두 개의 분리된 국제규약으로 채택한 배경으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들 수 있다. 냉전 동안 동유럽과 서유럽은 그들의 정책과 인권개념에 사이에 중요한 차이와 긴장이 존재하였다. 동유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중점을 두었고, 서유럽은 그들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시민·정치적 권리를 강조하였다.¹⁵⁾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전문에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규약이 분리되어 채택된 이후 자유권규약은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가운데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인권의 중심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권리범주와 이행방식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사회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권규약은 독자적인 규약 이행장치 없이 경제사회이사회가 국가보고서 검토업무를 맡았다. 더욱이 사회권규약의 국가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규약 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권리의 완전한 실현’, ‘점진적인 달성’,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등 그 의미가 모호하여, 사회권 실현에 소홀한 정부들에게 의무불이행의 구실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6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90년대부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초안에 대한 준비작업이 진행되면서 사회권규약이 명실상부 국제인권법으로서 자리(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비준)를 잡아나가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필두로 여러 유엔 인권기구도 사회권 분야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1.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 강조

자유권과 사회권의 향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¹⁶⁾이어서 두 권리 중 하나가 박탈되었을 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두 권리 간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은 테헤란선언(1968년)과 비엔나인권선언(1993년) 및 행동계획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권과 자유권의 통합적인 권리개념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66년 채택),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채택),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 등 주요 인권협약이 만들어질 때 그 내용에 포함되었다.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은 ‘권리침해’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권리의 박탈은 사회권 혹은 자유권으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노숙자들이 주민등록증 말소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료가 없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당하는 사례들은 사회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서는 자유권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또 다른 한편, 자유권이 제한 당하는 상황에서는 사회권도 향유할 수 없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제조자들은 종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함으로써 건강권을 침해당한다.

15) Paul Hunt, 1999, 『Reclaiming Social Rights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shgate Publishing Company, 7쪽.

2.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의 역할 변화 :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으로

기존 인권체계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두 인권범주가 발생시키는 국가의무에 대한 이론적, 정치적 왜곡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다.

왜곡의 핵심은 자유권과 사회권이 부과하는 국가의무를 각각 '소극적 의무' 대 '적극적 의무'로 일반화하여 구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유권은 단지 국가에게 불간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권의 보장은 정치적 문제이지, 국가의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되어 왔다.¹⁶⁾ 그리고 이러한 왜곡 위에서 사회권 관련 국제규범 및 헌법 조항의 법적 효력은 많은 경우에 부정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사회적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시행을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사법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드문 편이다. 또한 자유권에 비해 사회권에서 보장된 인권들이 구체적이고 보편적이며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도덕적이며 프로그램적 권리로 해석되는 관행을 낳았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위와 같은 이분법은, 80년대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¹⁷⁾ 실제로, 자유권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요구하거나, 사회권이 소극적 의무이행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은 기존 인권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분법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분법적 접근은 국가의 이행의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유권을 소극적인 의무로 사회권을 적극적인 의무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분법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권리를 차등화시키고 사회권의 발전을 저해한 요소로 지적되자 맥클렘, 에이드, 헌터 등 법학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인권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국가에 기초한 접근(state-obligation)'을 제시하였다. '국가에 기초한 접근'은 각각의 개별 인권들에서 다양한 수준의 국가의 의무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범주에 속한 어떤 인권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고유한 실현 방식으로 간주되었던 국가의 '소극적 의무(존중의 의무)'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고유한 실현방식으로 여겼던 '적극적 의무(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가 시민·정치적 권리 범주 인권의 보장에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예를 들어, 자유권 영역인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의 경우 이분법에 기초한 국가의

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E. Vierdag,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Grant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9, 1978; M. Bossuy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Strengths and Weaknesses", in K. Mahoney and P. Mahoney(eds.),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1993.

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van Hoof, G.J.H., "The Legal Na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Rebuttal of Some Traditional Views", in Philip Alston and Katarina Tomasevski(eds.), The Right to Food, 1984.

18) 허혜영, 200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4쪽.

무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는 단지 개인에게 고문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고문 및 비인도적인 형벌의 금지는 단지 국가가 고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문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고문 및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시키고,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에게 고문 및 비인도적인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권침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즉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은 권리의 보호와 존중,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무를 이끌어 낸다.

한편, 사회권도 국가가 단지 직접 침해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은 많은 경우에 강제노동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금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는 핵실험 혹은 화학무기 실험금지, 강제절거금지와 같은 소극적 의무 이행으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3.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실현할 의무

존중·보호·실현의 의무에 기초한 인권의 이해는 개별인권이 부과하는 국가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세 유형의 국가의무에 기초하여 개별 인권조항들을 해석하는 일은 기존 인권체계 속에서 단지 선언적 규범으로 취급되는 사회권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존중할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대안적 주거의 공급 없이 강제로 공유지의 무단 거주자를 내쫓는 것은 존중할 의무 위반에 의한 주거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소유 시설이 공기, 토양, 물을 오염시켜 개인의 건강을 해친 경우, 특정 개인에게 차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등은 건강권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 보호할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사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 혹은 유해물 방출, 고리대금업자의 횡포,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를 비롯한 일군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다음과 같은 보호할 의무 위반을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¹⁹⁾

14(c)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15(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실현할 의무는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인 실현에 목표를 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말한다.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적절한 법률·

19)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8, Human Rights Quarterly, 20(3), paras. 14(c), 15(d)

행정·예산·사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초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 의무의 핵심은 개인이 실업, 장애, 노령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다른 대안적 방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하고, 공공 주거를 제공하는 것 등이 실현할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

4. 사회권에 대한 오해

오해 1: 사회권의 실현은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문제이다.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 그 자체가 국가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달성할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 혹은 권리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우김일 뿐이다. 우선, 사회권의 모든 권리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권의 권리들 중에는 즉각적인 실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권규약 내에서 '2(2)조의 차별금지', '3조의 남녀평등', '7(a)(i)조의 동일노동 동일보수', '8조의 노동조합의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즉각적인 의무 이행의 대상에서 제외된 권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따르면, 그러한 권리들을 실현하는데 '점진적인 달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당사국의 법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 '점진적인 달성의 의무'는 곧 '권리보장 상태를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따라서 국가가 권리 보장상태를 후퇴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사인에 의한 권리 후퇴조치를 묵인하는 것은 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대안조치 없이 무단 거주자를 내쫓거나, 특정 공공지출을 삭감한 경우가 모두 사회권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후퇴조치를 취한 경우라도, 국가가 국내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역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둘째, 완전한 실현이 즉각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권리들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향유'를 '즉각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의무'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국가의 최소핵심 의무라고 정의하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일반논평들 속에 개별조항들이 내포하고 있는 '최소핵심 의무'를 명백히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논평 14는 건강권의 기본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핵심 의무로서 다음을 든다.

-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의료 설비, 물자,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
- 최소한의 적절한 영양을 함유한 필수 식품을 공급하며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되도록 보장하는 것.
- 기본적인 주거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WHO의 필수 의약품에 대한 행동강령'에서 정의한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 보건 의료시설 및 물자, 서비스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
 - 전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차원의 공공 보건 정책과 계획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것.
 - 전염병 및 풍토병을 예방, 치료,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
 - 주요한 건강문제에 대해 예방법과 억제법을 포함하여 정보를 공급 등...
- 국가에 최소핵심 의무는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점진적인 달성'이 허용되지 않는 즉각적인 국가의 의무이다.

오해 2: 사회권의 향유는 가용자원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보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가용자원은 국내자원은 물론이고 이용 가능한 모든 국제자원까지 포함한다. 가용자원의 향유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권리의 기본적 향유를 위하여 가용자원의 배분에 개입하여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자원배분에 개입할 수 있다. 먼저, 사적영역에 개입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양도세나 재산세 부과를 통해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최저임금이나 기타 적절한 노동조건을 기업에 규제하는 것, 또는 의료수거나 의약품 값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또한 그 사회에서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확보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가는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정부재정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많은 인권 기구들이 지적하듯이, 정부지출 내 군사비용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용자원의 이용'은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부의 재분배 조치들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자원까지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이 없어서 사회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현재의 자원으로도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후퇴조치를 취한 경우라도, 국가가 국내외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어진 가용자원으로도 정부는 권리 중심으로 재정운용을 재편성하며 취약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사회권의 주요 권리 항목

노동할 권리 (Rights to work)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권은 구체적으로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 자의적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강제노동이나 자의적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오늘날 강제노동의 범위는 점차 확대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생계유지

를 위해서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비록 자발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노동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제공된 노동은 강제노동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는 노동권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의무와 함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완전고용은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rights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모든 사람은 공정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공정한 임금에 대한 권리,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권리,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합리적인 노동시간 및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고용계약의 핵심내용을 알 권리,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결정에 참여할 권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고용종료에 대한 공지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국가운영의 기관 혹은 기업 뿐 아니라, 특히 사기업이 위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 및 기타 감독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가는 여성, 장애인,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국가의무는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Right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더불어 고용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권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라는 등의 이유로 이 권리의 행사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가는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에 기초한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조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다른 형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무엇보다, 이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식량권(rights to food)

모든 사람은 배고픔과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식량을 마련하는 개인의 수단-예컨대 토지, 직업-을 적절한 대안 없이 박탈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가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식량 혹은 식량을 마련할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권의 향유에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의 '최소핵심 의무'이다.

건강권(rights to health)

모든 개인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안전한 식수나 위생시설 및 적절한 주거-을 향유할 권리, 의료원조를 받을 권리' 등이다. 건강권에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건강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권(안전에 대한 접근성, 안전한 음식·영양·주거·건강한 작업조건·안전한 환경 등), 건강교육·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도 넓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모성과 아동의 건강권 △환경 및 산업안전에 대한 권리 △질병의 예방·치료·통제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을 쉽게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선주민)에 대한 건강권 향유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교육권(Right to education)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 관점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중요한 경제·사회적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성·인종·장애·지역 등을 이유로 하여, 교육기회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 △학교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교육기회 박탈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 △모든 지역의 아동이 적절한 통학거리 내에서 교육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의무 등.

사회보장권(Rights to Social Security)

모든 사람은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에 의해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능력을 위협받은 경우에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과 개인의 기여여부에 상관 없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원조 체계를 수립할 의무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해당 국가 내에서 수립된 사회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혜택의 자격, 급여의 수준이나 삭감 혹은 중단을 결정짓는 규칙과 절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국가는 차별적인 법 혹은 비합리적인 행정결정에 의해서 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소외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는 이 권리가 부과하는 국가의 최소핵심 의무이다.

주거권(rights to housing)

모든 개인은 적절한 수준의 주거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이미 향유하고 있는 주거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수도 및 위생시설, 난방, 전기 등 적절한 수준의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에 의한 주거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강제이주 혹은 강제철거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공공토지의 무단 거주자일지라도, 다른 대안적 주거를 마련할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의 강제철거를 국가의무 위반으로 규정해왔다. 더불어, 사영 건설업체가 대안적 주택에 대한 보장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를 국가가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것 역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는 주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을 의무 뿐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주거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국가는 주거권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공공주거 제공, 임대주택 공급,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 등의 조치 △집주인, 개발업자, 땅소유자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문화권과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득을 향유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다루고 있다. 문화권과 과학권을 이해하는데는 평등, 표현의 자유,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인간성을 충분히 발달시킬 권리의 중요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에는 또한 소수집단, 이주민 및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산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²⁰⁾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득을 향유할 권리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뿐만이 아니라 평등한 접근에 대한 제한들을 제거하고 과학기술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의 보장은 지적성과물을 보호하고 그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흐름이 조성되어야 한다.

20)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1 참조

사회권 운동의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

노영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 2002 다산인권센터의 사회권 활동

2002년 사회권 운동은 연대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무원노조 합법화 연대활동을 통한 노동인권영역의 확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대위가 구성되었다. 수원 지역에서도 지난 4월 초 민주노총수원지구협의회, 수원민중연대 등 노동 사회단체와 수원경찰련, 수원여성회 등 시민단체, 수원민주노동당, 그리고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10여 개 단체가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중순께 수원시는 고용직 공무원 36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무원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감행하려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수원공대위는 수원시청 내에서 8일간 천막농성을 벌였으며, 수원시장으로부터 구조조정 철회와 지부장에 대한 징계 유보를 받아들였다. 이후 공대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6월 말 경기도에서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수원공대위가 도청 내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징계절차를 저지하는 등 상반기에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수원공대위의 활동이 주춤해지면서 공무원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조합원 3명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가 강행되고 있다. 수원의 경우 현 시장이 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서명을 했기에 현재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결성은 사회권 규약에서도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다산인권센터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지지 활동을 벌이면서, 사회권 운동의 한 방향으로 노동권의 확장 및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2)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고발 감시 및 실태조사

2001년 12월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이하 '공동감시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캠페인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공동감시단에 참여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수원지구협의회,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수원경찰련, 수원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등 5개였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를 유지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나마 저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한 방편인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동감시단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사업장은 주로 비정규직, 여성, 학생 등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일터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32%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노동자 가운데 63%가 2,500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공동감시단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조치를 하였다.

공동감시단은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실제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사업주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올해 9월 공동감시단은 최저임금연대로 명칭을 바꾸고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는 2003년 빈곤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슈화할 계획이다.

3) 아동노동착취 반대 월드컵 캠페인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6월 한달 간 열렸던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수원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에게 '아동노동착취반대'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하였고, 20개 단체를 조직하였다. 때마침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모두 네 게임이 진행되었다.

아동노동착취반대 수원행동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주요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은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전과 아동노동착취반대 서명전, 스포츠다국적기업의 노동착취를 알리는 판넬전이 중심이었다. 또한 축구공을 만들었던 인도 소니아, 해외진출 한국 기업 노동착취를 고발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당초의 우려와 달리(월드컵에 대한 국민적 열기로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수원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다. 축구공을 만드는 아이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기꺼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수원지역 시민들에게 월드컵의 화려한 이면 뒤에 감춰져 있는 아동노동착취 현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캠페인 활동에 치우치다 보니, 시민들이 스포츠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이윤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 이후 사회권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권운동은 자유권에 치우친 인권운동의 영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동이다.

다산인권센터는 빈곤을 주된 화두로 하여 '신자유주의 반대, 반 자본'운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사회권 운동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산인권센터는 사회권 운동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하고 있다.

하나는 인권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다산인권센터는 2003년 사회권 활동의 하나로 예비노동자들-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사회권의 기본 개념과 이를 위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등 침해 배경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특히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들, 가령 최저임금법, 노동법 등을 교육하여 취업 이전에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연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최저임금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로는 지역에서의 사회권 이슈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사회권운동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산인권센터는 무엇보다 사회권을 짓밟고 있는 배경과 침해 현실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눈으로 천착하기로 하였다. 그 하나가 바로 2002 경기인권백서의 발간이다. 백서 발간은 기본적으로 2002년 한 해 동안 경기지역에서 일어났던 인권 이슈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권 문제-다산인권센터의 한 해 활동뿐만 아니라 센터가 간과했거나 활동의 중심을 두지 못했던 사회권 이슈-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권 시각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권활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새사회연대의 사회권 관련 사업과 이후 방향

이진원 (새사회연대 정책국장)

1. 사회권에 대한 기본 인식

주지하는 바대로 인권은 사회권과 자유권을 동시에 실현해야만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사회권이 인권으로 온전히 인식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도 광범위하다. 새사회연대는 극단적으로 앞으로의 인권운동을 사회권 영역에서 벌여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권 영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게 되면 그 활동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지위가 작아 질 것으로 본다. 어떤 면에서 인권운동도 내용적인 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회권에 대한 이해와 그 분야의 관련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인권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회권 분야의 광범위함뿐만 아니라 각 부문운동(빈민, 교육, 환경, 보건, 문화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새사회연대는 독자적으로 사회권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인권단체가 그것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부문 운동' 단체들이 '인권적인 인식'을 넓히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인권운동의 영역은 현실적으로 넓어 질 수 있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운동이 제시될 것이라고 본다.

2. 사회권에 대한 접근/활동

2000년 새사회연대(준)는 당시 내부 논의가 심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팀-사회권조사팀-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적 접근을 우선 과제로 하였다. 사회권에 대한 한국사회 내 내용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적 차원의 발간물을 번역하고 내용적 연구를 하는 것에서부터 착수하였다.

번역 사업은 초기 국제조약 및 그 해설, 주요 용어정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성과물을 통해 내부 논의를 심화하고 새로운 담론(진보적 인권이론) 형성 및 대안 모색, 번역물발간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권조사팀의 활동은 물리적 역량의 부족과 사업진행의 미숙, 고민의 풍부화 실패 등으로 발간사업으로까지는 진행시키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렀었다.

이후, 새사회연대가 2001년 12월 정식 출범을 전후하여 부문을 초월한 실제적 연대사업을 통해서 인권운동에 대한 내용적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인권운동에 대한 구체성을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인권운동 영역에서 사회권 운동이 전문단체의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음과 단체가 정체성을 그 전문 내용에 국한시키고 있어 인권운동 맥락에서 고민하고 있지 못함을 직시하게 되었다.

3. 새사회연대의 이후 사회권운동의 방향

초기 사회권조사팀의 문제의식은 지난 2년여 기간동안 경험과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 방향을 세우기에 충분히 심화되었으며, 그 내용적 고민은 새사회연대 내부 논의와 인권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권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에서 시작하는 사회권운동은 사회권 그 자체에 매몰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한해 동안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운동의 고리를 잡아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빈민 장애인의 선거 참여권'을 주장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세부 계획을 논하기 보다 사회권운동에 대한 고민을 단체들과 함께 하는 것에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사회권활동(1999년-2002년)

작성자 : 이주영, 허혜영 상임활동가

1.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 1999년 : 『인간답게 살 권리』 발간

사회권의 내용이 무엇이며, 각 영역들이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짚어봄으로써 우리 사회 내에서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밝혀보기 위한 일환이기도 했다. 99년 초부터 시작돼 1년 여 동안, 10여명의 상임 및 자원활동가들이 사회권의 총론과 각론들을 나눠 맡아 내용을 토론하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2000년 초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인간답게 살 권리'다. 첫 활동이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람들에게 사회권에 대한 초보적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 2001년 - 2002년 현재 : 사회권규약해설서

사회권규약의 해설서를 만드는 일은 지난 해 기획되어 지금까지 진행 중인 활동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국제권리장전의 하나로 꼽히는 사회권규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사회권규약의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우선, 국제인권법이 인권운동에 이론적인 근거와 정당성을 어느 정도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절차는 국가의 사회권 보호를 강제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권 규약 해설서 작업이 가지는 또 한 가지 목적은 사회권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의 성장이다. 구체적으로,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등이 가변적인 국가정책에서 나오는 혜택이 아닌 국가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인권이라는 인식의 대중화이다.

이제까지, 사회권규약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담은 1차 원고가 완성되었고, 지금은 개별 권리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원고에는 사회권규약의 제정과정 및 주요 권리, 이행감독제도, 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대한 원칙, 국가의무이행의 일반적 원칙과 사회권 규약의 청원절차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1차 원고는 출판사에 넘겨져 있는 상태. 지난 10월 출판사에서 원고를 검토한 후 해설서팀에서 수정하여 보냈으나 이후 출판사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차 원고에는 개별 권리가 내포하는 구체적인 권리내용과 국가의무에 대한 해석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노동의 권리 △노동조건 △노동조합결성권 △사회보장권 △건강권을 완료할 계획이다.

2. 사회권 규약 국가의 의무 이행 상황 감시 활동 (2000-2001년)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유엔의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의 당사국들이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구이며, 5년에 한번씩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며, 이는 국제적인 사회권 기준들을 국내에 알리고 운동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95년에 이어 2001년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를 심사하고 권고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다른 15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사회권연대회의'를 구성해, 사회권위원회에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 IMF 모범생이라 불리는 한국의 사회권 후퇴 상황을 담아, 국제금융기구와 인권의 문제를 연관지어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활동은 1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는 한국 사회단체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됐다.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후, 정부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두 차례(2001년 6월과 10월)에 걸쳐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행 상황은 무척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사회권위원회에 알리고자 2001년 하반기에 세차례 정도 뉴스레터를 보냈다. 사회권연대회의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의무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느슨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2002년도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

3. 불안정노동(비정규직) 문제 (2001년)

2001년 한해 동안 파견철폐공대위(약칭)의 소속단체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사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했다. 구체적인 사회권 문제는 다양하게 많은데 특별히 불안정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둔 이유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권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거의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를 약 5회에 걸쳐 사랑방이 주관했다. 자원활동가 모임은 주요 투쟁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인권적 시각에서 정리하는 일을 했다. 이랜드나 한국통신계약직 등이 장기투쟁을 벌일 때 소극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중요한 인권문제로 부각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외 실천적인 활동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파견철폐공대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한편, 이후 파견철폐공대위가 해소하면서, 올해(2002년)엔 불안정노동 관련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

4. 2002년 하월곡 사회권침해실태 조사

하월곡 지역 사회권침해실태 조사는 11월에 기획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동안 사회권규약 해설서 작업에서 얻은 이론적 근거 위에서, 현실의 빈곤과 사회권의 침해 그리고 국가의무불이행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빈곤지역의 사회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이번 조사는 진보적 사회권 운동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획되었다. 구체적인 현실의 다양한 사회권 침해 양상들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밝혀내고, 진보적 사회권 운동이 자리잡아야 할 전선을 모색하는 것이 사랑방이 직면한 과제이며, 하월곡 지역 사회권실태 조사는 이를 위한 단지 일차적인 시도이다.

우선, 이번 조사내용은 12월에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기사화 될 예정이다. 기사에서는 노동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등 권리별로 하월곡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현실을 인권침해 관점에서 조명해보려고 한다.

■ 소주제토론3 정리

사회권운동의 전략

정리: 최 은 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제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이해를 위한 글 : 최은아,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 단체 발표
 1. (다산인권센터의) 사회권운동의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 : 노영란(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 새사회연대의 사회권 관련 사업과 이후 방향 : 이진원(새사회연대 정책국장)

□ 참가단체 :

국제민주연대, 국제엠네스티, 다산인권센터, LG 전자내부고발피해자, 민변, 민주법연, 성동진 강복지센터,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인권연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 평화인권센터 (참관 : 문화일보 기자) 총 32명 참가

□ 논의내용

사회권운동의 이후 방향에 대해 각 단체의 고민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위한 글

사회권에 대한 이해와 단체간 공유지점 넓히기 위한 원론적 개괄 발제, 역사 속에서의 사회권의 등장 (사회권에 관한 국제규약의 성립과 발전),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 권리이행 위한 국가의 역할 변화(소극적, 적극적 역할) 소개

<단체활동/의견 발표>

- 1) 다산인권센터(노영란) : 수원지역운동단위와의 연대를 중심으로 사회권운동을 해옴
○ 현황

- 공무원노조 투쟁 결합
- 최저임금 투쟁
- 아동노동철폐반대(월드컵 시기)
- 예비노동자(고3) 대상 사회권(노동인권)교육
- 지역 활동 : 경기민중연대/철대위

○ 향후 계획

- 사회권 침해 배경, 침해현실 담아 2002 경기 인권백서(2003. 1예정) 발간 예정
- 신자유주의 영향 지역실태/운동 개발 계획

2) 새사회연대(이진원) : 단체 내 현황과 이후 계획을 중심으로 소개

○ 사회권에 대한 기본 인식

-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
- 국가인권위 설립을 계기로 자유권운동 영역의 축소, 사회권 운동 영역 확대의 가속화
- 사회권 운동 단위들의 단체정체성 인식 전환의 필요

○ 현황

- 사회권조사팀 운영(2000년 이후)
- 운동 사안에 대한 연대 속에서 사회권운동에 대한 구체화

○ 향후 계획

-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운동적 접근
- 사회권 영역 운동 단위와의 계속적 연대

3) 인권운동사랑방(이주영)

○ 현황 및 계획

- 인권운동사랑방의 사회권 관련 활동은 자료로 대치
- 지금 고민의 지점은 사회권운동 영역에 있어서 인권운동이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토론할 것을 제안함.

4) 진보네트워크센터(오병일)

○ 현황/계획

- 사회권, 자유권보다 정보운동의 역사 길지 않다.
- 대응 사안에 대해 인권적 측면으로 보고자 한다.
- 정보기본권에 대한 매뉴얼 작성(개념, 범주화 작업, 정교화)
- 정보에 대한 사회 내 불평등 : 정치, 권력 관계

- 정보접근권 -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 의약품 특허의 문제, 약에 대한 접근권
- 저자권 충돌(디지털 도서관 온라인상 열람 불가)
- 활동 속에서 정보기본권 개념 확산, 정교화
- 국제 회의 WSIS 2003.12 개최 -> 정보사회에 대한 원칙과 실천지침 논의/결정 예정

5) 성동건강 복지센터(이은경)

- 복지에 대한 접근 속에서 고민 시작
- 근로자복지법 문제
-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건강권·사회보장권 확보에 대한 고민을 진행중에 있음

6) 전태일기념사업회

- 아동 노동권
- 청소년 교육을 통해 전태일 삶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개념에 대한 고민

7) 국제민주연대(최미경)

- 신자유주의 활성화 문제
- 해외 진출 한국기업은 현지 노동자를 상대로 한 60년대 노동착취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해외 노동자들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 원하고 있음.
- 영세기업은 노조 자체가 없어 노동착취 호소할 창구 부재한 상태
- 문제 심각한 지역 : 동남아시아, 남미, 중국

8) 전북평화인권연대(오두희)

- 지역 투쟁 : 공대위 등 참여
- 인권단체들이 사업의 틈새를 찾을 것 아니라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운동 해야하는 것 아닌가?
- > 자본주의 체제 반대 운동
-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운동의 원칙을 찾아가야 함
- 공대위/사업 근본적으로 접근 해야 함
- 새만금 운동 환경측면도 있지만, (거주민) 발전권의 입장에서 제기해야함.

9) 평화인권연대(손상렬)

- 사회권분야 관련 활동 - 발전노조 인권침해실태조사, 아동노동착취반대캠페인 경험 토대

로 사회권에 대한 고민 시작, 불안정 노동 등

- 사회권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구체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연대활동 필요하다면 한다는 기본은 가지고 있었다. 인권 개념이나 범주에 대해 고민
- 사안에 대해 운동 중인 단체나 대중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
- 개념 자체가 권리의 획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회단체, 인권단체, 인권적 측면 사회권이라는 형태로 분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

소주제토론4 ▶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문제

운동 사회 내 가부장제와 변화의 가능성¹⁾

조 순 경 (WAW 회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1990년대 후반 이후 사이 여성 활동가들은 운동사회내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저항을 해 왔다. 여성독자노동조합의 결성,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 위원회)의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 여성독자 인권단체의 결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 운동권 문화가 얼마나 자체 모순적인가, 그리고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운동권이 내세우는 이념과 구체적 현실간의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운동사회 내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침묵해 왔다. 그리고 그 침묵에 의해 운동권 내의 뿌리깊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는 은폐되고 묵인되어 왔다. '심각한 여성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운동권 내부 구성원들은 그 문제를 공론화 시키지 않는 것에 합의해 왔으며, 이러한 합의는 운동조직 보존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존 사회의 질서와 문화, 구조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서, 그리고 진보의 이념을 지향하는 세력으로서, 운동 조직내의 도덕성과 순수성은 상처받아서 안될 성질의 것이며, 운동권의 비도덕성이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보장된 시기의 합법적 사회운동은 기존 사회와 일정정도 단절된 채로 진행되는 비합법 운동에 비해 사회전반의 문화나 이데올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가부장제 문화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사회운동권 출신의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운동의 순수성은 점차 침식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권력이나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서의 사회운동의 성격은 퇴색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위계적 가부장제 구조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제 문화가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에서조차 자신의 이념적 프로그램을 성취하는데 여성을 그 필연적 매개로 삼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1) 가부장제 질서에 기초한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내에서 여성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2) '진보적' 사회운동 내에서 봉

1) 이 글은 1995년에 쓴 논문 "민족민주운동과 가부장제"를 기본 틀로 하고 그 이후 최근까지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그 이름을 일일이 밝힐 수 없으나, 이 작업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전적 가부장제 관념, 그리고 그에 기반한 성별 위계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3) 이러한 가부장적 위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진보적' 운동 사회의 보수적 여성관

사회 운동 내에서의 여성문제는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일의 분담, 조직 내에서의 여성배제, 남성 중심적 능력 평가 기준, 남성 중심적 놀이문화와 운동문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의 문제가 '진보적' 운동의 현장에서 그대로 존재한다. 여성문제의 기본 틀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단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은 운동의 성격과 맞물려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위계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의 선별적 수용

사회 운동 내에서의 여성활동가는 많은 경우 '활동가' 이전에 '여성'으로 규정된다. 이 때 '여성'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남성들의 필요에 따라 무조건적 헌신성을 요구하는 어머니로, 성적대상으로서의 여성으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 그리고 집안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사회운동은 전형적인 '여자의 일'을 담당할 여성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 뿌리깊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성애적 결혼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현상이다. 운동 조직 내에서 '여자의 일'을 맡아야 할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한 여성들은 운동 공간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운동의 장에서 여성들을 배제하고 축출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운동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남자의 일'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들이 '여자의 일'을 담당하는 한 여성들은 조직 내에서 보조적인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운동가로 키워지기' 어렵다.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속했던 단체가 '여자를 키우는 구조가 아닌' 조직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에서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 쓸 수 없다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운동 조직 내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없고,' '전망이 없어서' 운동의 장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운동권에서의 성별분업구조는 일반 사회의 각 조직들에서 관찰되는 성별분업구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 뿌리깊이 남아있는 전통적 성별분업구조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한 가족의 생계책임자로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운동권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을 위한 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일", "민족과 통일을 위한 일",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은 일종의 소시민적 사치일 수 있으며,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무관심한 성향을 지닌다. 자연히 남성들은 가족 생계부양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는다. 반면 그 역할과 책임은 여성에

게 전가된다. 남성이 가족의 생계에 신경을 쓰는 일 자체가 그의 운동성이나 투쟁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한다. 특히 비합법 운동이 지배적인, 정치적인 억압이 심한 상황에서 운동은 흔히 '전쟁'으로 비유되며,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에게 있어 가족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존재로 된다. 한 여성활동가의 말처럼, "아주 교묘하게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이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여자가 그런 남자의 일을 중요하게 안보거나 생계 문제로 부담을 주면 그런 여자의 태도를 비민주적 태도로 몰아세우고, 그러면 여자들은 또 위축된다."

운동권의 남성들이 경제적인 가족 부양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 내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권력이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인에게 의존하면서도 남성들은 당당하다. 오히려 가족 생계 책임과 양육노동,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부인을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돈에만 관심이 있는" 속물이라고 비난한다.

남성들이 생활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비합법 운동을 하던 사람들 특유의 발상, 운동은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 운동가의 부인의 표현대로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의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모두 다 당연히 참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가부장적 민족주의 논리

서구에서의 사회운동은 주로 평등, 자유, 그리고 자율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 예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경우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사회의 사회운동은 식민지 경험과 분단,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로부터의 해방과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운동은 자연히 민족주의적,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어 왔다. 외세, 혹은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대상을 향해 '모든 사람'이 '단결'하는 것이 중요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뚜렷한 억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었고, 단결을 해치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어려웠다.

'단결'에 대한 강조, 분열을 가져오는 분파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가 암시하는 바는 "운동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이어야 하며, 여기서 개인의 권리나 자율성의 문제는 일단 덮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적인' 사회운동 내부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분리주의적 사고의 소산'으로 보거나 '외세의 영향'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운동의 가부장성과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움직임을 "구미 제국주의의 잘

못된 여성운동”으로, “외국의 잘못된 이념을 무작정 수용한 여성운동이론이 나타나 현대 가장 중요한 민족민주운동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²⁾ 보는 시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운동사회 내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국주의의 수입품인 페미니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 매도당해 왔다.

중요한 것은 여성운동을 보는 사회운동권 내의 이러한 시선이 현재까지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회운동조직 내에서 여성문제는 계급문제, 분단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여성문제의 해결, 즉 여성의 해방은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의 척결을 향한 정치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논리아래서 여성문제가 쉽게 은폐되어 버린다는 것이 한가지 문제라면, 다른 한가지 문제는 여성운동 진영 자체가 끊임없이 이러한 논리를 의식해 나가면서 운동의 방향을 정해나간다는 데에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민족민주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변혁운동권 내에서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은 계급적, 민족적인 관점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AIDS 추방 운동에서 에이즈 문제의 본질을 미제국주의의 문제로 규정하고 에이즈 추방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및 폐지, 주한 미군 철수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은 에이즈 문제를 여성문제로 규정하여 운동을 전개하였을 때 전체 운동권 내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고립된 상태에서 여성들의 주장이 무시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전체 민족민주운동권내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여성운동 자체가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종의 무력감이 혼합되어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 해방은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이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사회운동의 논리는 여성들의 성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그 결과 여성운동 조직내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방식조차 전체 사회운동권의 가부장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90년대 중후반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여성문제(gender issue)가 항상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로 연관지어져 왔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운동 문화의 남성중심성

어떠한 조직이든 그것이 속한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의 문화와 질서, 구조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의 운동권 내의 문화는 그들이 저항하는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운동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수행되는 운동이나 일의 문화 및 사회 운동권 내의 놀이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전투적, 남성중심적 운동문화와 놀이문화는

2) 장명국, 이경숙,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과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새벽』 3호, 1988. 30쪽.

여성이 사회운동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하는 주요한 장애 중의 하나이다. 이는 운동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의 문제를 떠난 것이며, 굳이 능력의 문제로 따지자면 단지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문화에의 적응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이다.

1) 운동 언어와 능력 평가의 문제

근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의 이론화 작업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구체적인 운동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 또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운동 언어와 지식 생산이 남성 중심성은 여성 활동가들이 사회운동에 장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여성의 능력 평가 절하하는데 기여해 왔다. 남성 주도의 이론화 작업은 사회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다. 남성들은 이론의 구성과 이론 논쟁 참여를 통해 운동의 ‘구상’을 담당하고,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한” 여성들은 남성의 “지도와 가르침 아래” 운동에 참여한다. 남성은 당연히 지도자적 위치를 점하게 되며, 여성에 대한 지도나 통제, 지배가 이러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다.

사회 운동 이론은 그 어느 지식보다 추상적 개념을 사용한 거대 담론, 거대 이념으로 구성되어 왔다.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위계적 성별 분업으로 인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추상적 개념어 사용에 더 익숙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생활은 사적 공간에서의 경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서의 생활과 사고 훈련을 해 왔다.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사적 공간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사적 언어에 익숙해 온 반면, 남자들은 공적 언어, 특히 개념어의 사용에 익숙하다. 개념어와 추상어 사용에 익숙한 남성의 경우 이러한 언어를 기초로 구성되는 거대 담론과 거대 이론의 소비와 유통 과정에 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구체적인 현실 속의 일상에 관한 일을 표현하는 일상어-많은 경우 추상수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에 익숙하다. 한편 남성-가부장 중심의 문화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개념적 용어의 사용과 추상화된 사고와 논의를 하도록 요구조차 하고 있지 않다.

어릴 때부터의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거시적 구조와 관련된 논의의 영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추상적 논의에 익숙한 여성은 여성성의 상실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구조 아래서 거대이론의 생산과 유통은 당연히 남성의 일로 간주되어 왔고, 여성들은 그러한 지식의 생산에 대한 욕구조차 차단 당해 왔다. 성별로 뚜렷이 구분된 구조 아래서 일차적으로 여성들의 관심은 공적인 문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 모델인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변혁운동 내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특별히 더 개념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더 뛰어난 자질을 보인 것은 거대 이론의 수용과 변용에 여성에 비해 훨씬 익숙해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대 이론이나 담론이 구체적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이론과 담론이 도식적이고 교조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운동권 내에서 남성들이 주도한 이론의 내용들은 고도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여성들의 사유는 남성에 비해 그들의 일상에서의 구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차이는 일상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노동 경험의 상이함이 결과물이기도 하다.

사회변혁운동이론이나 논의에 여성들이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중의 하나는 이러한 논의들에서 사용되는 언어 때문이다. 많은 경우 군사주의적이고 전투적인 용어가 사용된다. 전투는 여성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며, 이와 관련된 언어의 사용은 여성들이 이론적 논쟁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2) 운동 문화와 놀이 문화

기존의 문화와 질서, 구조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서의 운동권 문화는 많은 경우 그들이 저항하는 문화와 별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운동권의 놀이 문화는 일반 사회에서 관찰되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놀이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관찰된다. 술자리에서 여성동료를 성적 존재로 간주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농담을 쉽게 던지고 여성을 희화화하는 행동들은 운동의 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일상화된 놀이 문화 속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재생산되며, 이렇게 형성된 여성관은 여성들을 운동의 장에서 축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해 왔다.

사회운동권에서 끊임없이 강조해 온 것은 운동의 대중성 확보이다. 이러한 대중성 확보를 위해, 흔히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중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온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들의 일반적 문화(놀이 문화, 여성과의 관계, 결혼 내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이처럼 가부장제 문화의 수용을 대중에게 가까이 가는 것, 대중성 확보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성 확보를 위한 대중들의 생활방식이나 대중 문화의 수용은 무원칙적으로, 남성들의 편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 예로 우리 사회에서 뿌리깊게 남아있는 생계 책임자로서의 남성 역할, 그리고 그에 기반한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는 운동권 내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인이 생계의 주 담당자이며, 그로 인해 결혼과 함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4) 남성 기준의 속도와 시간

사회 운동 조직의 활동 속도와 시간의 기준은 비장애 성인 남성에게 맞추어져 있다. 하루 8시간 노동 모델이 집안에서 누군가가 전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아준다는 전제를 하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시간 모델이라고 한다면, 운동 사회의 노동 시간과 속도는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지 않은 남성의 노동시간과 속도를 '정상' 기준으로 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남성적 속도와 시간 모델은 여성들의 참여를 저해하고,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양육 노동과 가사 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 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잠재 능력의 개발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 대부분의 남성 활동가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은 여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하며", 양육 부담으로 남성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여성활동가에 대한 불신과 평가 절하로 이어진다. "아이가 아파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여성활동가에게" 아이를 핑계로 일을 안하려 한다는 "남성 활동가의 비꼬는 말"이나 "밤에 회의할 때 애를 데리고 회의하러 갔더니 애를 데리고 왔다고 남성 활동가가 비난하는" 경우, 또는 "회의할 때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싶지만 아이 문제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 위축되는 일이 많게 되는" 여성활동가들의 상황은 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들의 활동력은 남성에게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남성의 속도와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소수의 여성만이 "남성활동가와 같은 능력을 가진 활동가"로 평가 받게 된다. "불완전한 파트타임 운동가"는 "온 몸을 바쳐서" 일을 해야 하는 운동 조직에서 능력있는 운동가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운동 조직에서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능력평가기준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적 통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장애 남성 성인의 속도와 시간에 맞추어진 활동 방식 때문이라 판단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으로 인한 속도의 차이, 시간 자원의 차이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조직 내에서 성별 속도와 시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활동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시도한 운동 조직은 여성 독자 조직 이외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5) 여성에 대한 이중 시선

여성에 대한 시선은 일반 사회에서나 운동단체에서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분화 되어 있으며, 각각의 유형의 여성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의 역할, 여성다움에 대한 하나의 가치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을 두 종류의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필요에 의해서 (이 필요는 주로 여성을 비난하거나 그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두 집단의 여성 모두가 비난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두 집단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일탈 집단이 된다. 여기서 일탈과 비일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남성의 남성으로서의 시선이다. 화장을 하는 여성과 화장을 하지 않는 여성, 현모양처형의 여성과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난 여성 모두 비난의 대상이다.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 활동가의 경우 다른 활동가들과의 술자리에서 계속 남아있으면 있는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없는대로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된다. “에 있는 사람이 술자리까지 있어야만 하느냐”는 활동가 남편의 비난, 그리고 “술자리를 뜰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에 매인 여성으로 힐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은 끊임없이 남성의 이중적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사회화되어 있으며 상황에 맞추어 ‘좋은 여성’이 되도록 자신의 취향을 제조해간다. 여성에게 향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시선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분열적 변신을 시도한다. 여성에 대한 이중시선은 일반 사회에 비해 진보성을 표방하는 운동권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진보성의 이념이 이중시선의 이율배반적 측면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진보적이면서 동시에 보수적일 것임을 요구받는 여성들이 자기분열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운동권 여성들의 적지 않은 수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운동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들이 택하는 전략 중의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남성과 동일시 하는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 남성들의 언어와 화법, 그들의 관심사, 그리고 사물에 대한 남성적 관점을 습득한다. 이처럼 여성활동가가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문제’나 ‘성차별’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 아무리 자신을 남성과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여성은 여전히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간주된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지위에서 그들을 관리, 지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서는 집단으로서의 남성들로 하여금 운동권에서 여성들이 조직의 중심부에 진입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억제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6)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 무성적(gender-blind) 존재로서의 여성

운동의 장에서 여성들은 흔히 성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특히 내외법의 강조로 남녀간의 공간적 분리가 문화 속에 깊이 녹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조직이나 장에서 여성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자 동료들 동료가 아닌 여자로 보는 태도들이 비일비재하고, 친절을 베풀면 오해를 한다거나 여자로 보고 아예 목살하려

고 하는 남성 활동가들의 태도,” 그리하여 “인간 관계가 사업상 필요한 관계로만 줄어들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쉽다. 그러나 이성애가 강요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이성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경우 전형적인 남성 지배-여성 종속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운동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료관계에서 애인 관계로 발전할 경우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 남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발견된다. 특히 “1년 위(선배)라도 하늘처럼 떠받드는 풍토”에서, 그리고 “선배가 후배를 학습시키고 키우는” 풍토에서 이성애적 관계는 거의 예외없이 남성 우위의 위계적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일반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나 성희롱의 가능성은 운동 조직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100인 위원회’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로 운동 사회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 문화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음이 관찰된다.

이러한 성희롱 위험의 가능성은 운동 조직내의 여성들이 끊임없이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을 갖는 것을 방해한다. 여성으로서 성적 대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성(남성)과 동일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여성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여성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려 하는 경우,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으로써 운동 조직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시 조직 내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을 비하, 평가 절하하는 가부장제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3.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운동사회 내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를 조직보존의 논리로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기존의 경직된, 가부장적 위계구조에 기반한 운동조직과 운영방식은 여성들의 저항과 공개적인 비판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의 특성상 사회운동권 내의 차별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여성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은 자체 논리상 가능하지 않다. 기존의 제도를 비판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회운동이 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그 자신이 거부해 왔던 공권력에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남성들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여성들의 저항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통제 방법 역시 현재와 같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운동권 문화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첫째, 남성들의 '양심'과 '도덕'에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성별분업구조가 뚜렷한, 그리하여 여성과 남성의 생활 세계의 분리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이 여성들의 억압 경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체계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들의 도전과 저항에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와 같은 가부장적 위계질서에서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운동 조직 내의 성차별 구조가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적당주의, 타협주의가 세대를 거듭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남성활동가들은 흔히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대해 남녀간의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 즉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 깔린 전제는 첫째, 성 평등 사안에 대해 여성들의 충분히 설득하면 남성들은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성 평등 관련 사안들은 영합(zero-sum) 게임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 모두 비현실적이다. 설득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성질의 것일 때 약자의 강자에 대한 설득은 논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뿌리깊은 가부장제 관념, 성차별적 여성관은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여성들이 성적 이해에 기반한 요구들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100인 위원회'의 활동을 비롯, 여성들의 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남성 집단적 저항과 반격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는 흔히 여성들이 "계층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여성 이기주의"로 비난받아 왔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여성 이기주의는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 행위로,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덕성의 잣대에 의한 평가는 여성들을 침묵토록 하는 아주 효율적인 통제 수단이기도 하다.

운동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적극적 도전과 저항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정적인 저항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당해만 봤지 싸워 보지는 못했고", "나름대로 싸워본 경험이 있지만 번번히 깨졌으며," "부딪혀서 생길 상황이 예상되고, 알아서 기는 것보다 그 예상되는 상황이 더 힘들 것"이라는 확신, 해봤자 안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단적, 공개적 형태의 저항은 극히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 개별적으로 저항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속한 조직(가정, 운동 단체 등) 및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주로 사적이거나 사사로운 성격의 것들이 많다. '통일', '민족', '계급'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성차별'의 문제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거나 사적인 일"이라 공개적,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사적인, 사소한 차별에 대해 개별적 저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여성들의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회화화되거나 무시되곤 하며,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규정되어 버린다. 이러한 개별적 저항의 과정에서 여성은 다시 한번 인간적인 모멸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경험이나 느낌,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견디기는 힘들다. 정서적 지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별자로서의 여성이 집단으로서의 남성에 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특히 이러한 개별 여성이 성차별에 저항할 경우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도움이나 지원을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저항을 시도했던 여성은 이탈(조직에서)이라는 형태의 소극적 저항을 하게 된다. 한 예를 보자.

한 노동운동 조직 내에서 학생 출신 여성 조직가가 노동자 출신 남성 조직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해 여성은 조직 내에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조직 지도부의 반응은 (1) 이 문제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러한 행동이 나온 것일 뿐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 이러한 사적인 문제는 당사자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조직에서 개입하여야 할 조직의 문제가 아니며, (3)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성폭행을 가한 그 남자와 결혼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4) 만약 피해 당사자 여성이 그 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 남성이 노동자 출신이라서 꺼리는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6)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여성의 계급성이 문제이고 운동을 하고자하는 자세가 철저히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운동 조직 내에서 뿌리내리고 일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위의 사례의 여성의 경우도 '강간 사건' 이후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이후 하루하루 대하면서 일해야 하는 동료들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이나 환멸, 절망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여 노동 운동계를 떠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적이거나 사사로운 문제를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운동성이 철저히 못한 여성, 그리고 성폭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그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동료로 인식되기보다는 성적인 존재로서 간주됨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견고한 차별의 벽은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들로 하여금 '총체적 절망감'을 내면화시킴으로써 저항의 싹이 트는 것 자체를 억제해왔다. 성차별 뿐 아니라 인종 차별이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일수록 여성의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유색인종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저항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여성이 가부장적 시선을 내면화하고 그를 통해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것은 마치 흑인들이 백인에 대한 열등감을 내면화하고, 그를 통해 백인의 흑인에 대한 통치와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운동사회 내의 위계적 가부장제나 성차별은 장애, 연령, 성적 지향, 학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요소를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의 한 유형일 뿐이며, 다른 유형의 차별과 함께 복합적이고도 중층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운동사회 내 가부장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성별에 의한 위계나 차별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차별적 관행들을 수정하는

것일 것이다.

평등과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활동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가치를 일상적인 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 운동은 그 자체가 일상적인 인권 실천의 장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³⁾

이를 위해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운동사회 내에도 다른 일반 사회와 다르지 않게 성차별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차별과 편견, 위계적 권위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문화와 차별 불감증으로 인해 활동가 누구든지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운동 사회 내에서도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권력 관계를 둘러싼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해결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 조직은 우리 사회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온전히 순수하고 도덕적이라는 입장은 운동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을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차별의 해소를 국가공권력의 개입이나 법적 강제에 의해 의존하기 어려운 운동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운동권 내부의 자율적인 차별 수정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감수성과 차별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사회운동 조직 내에서, 그리고 사회운동 조직들 간의 연대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가 수년 전부터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한국동성애자연합'과 공동 일상 사업으로 진행하는 <동성애 바로 알기>강좌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좌 프로그램은 두 단체의 활동가들이 학교와 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언론, 청소년 상담실이나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두 조직의 강좌 팀이 직접 찾아가 강연하는 방식이다.⁴⁾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인권운동 단체들이 연계하여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여타 사회 운동 단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권 교육과 반차별(anti-discrimination) 교육이 예방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 차별 행위에 대해 조정, 중재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차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직 내규나 규정, 혹은 윤리강령의 제정 및 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각 운동 단위마다, 그리고 범 사회운동 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넷째, 운동 사회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을 지원하고, 기존 조직에 대한 여성

3) 반 차별 운동은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의식화와 연대를 도모하고 서로간의 정서적 지지의 기반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도 오랜동안의 사회 운동, 인권 운동의 산물이라는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여성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4) <http://www.kirikiri.org>와 <http://lgbtkorea.org> 참조.

주의적 원리를 넓혀나가기 위해 정서적 지지집단으로서 여성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잠재력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배제당한 존재라는 자체에서 온다. 그 사회와 조직이 비도덕적이고 병리적일수록 중심 권력으로부터 주변화되어 있다는 자체가 위계적인 권위주의로부터 덜 오염될 수 있게 하고, 그 사회와 조직의 문제를 보다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⁵⁾ 운동 사회가 진보성과 순수성을 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고 그들이 보다 평등한 조건에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Sandra Harding,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What is Strong Objectivity?" in Lina Alcoff and Elizabeth Potter, eds., *Feminist Epistemologies*, New York: Routledge, 1993.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

‘범용’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인권위 대응의 어려움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11월 29일 인권위에서는 <“얼굴흉터 산재보상금 남녀 차등지급은 평등권 침해” / 인권위, 노동부장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권고>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인즉슨,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재를 당했을 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산재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법령·제도 자체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은 인권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나는 감히 단언한다. 만약 인권위가 없었다면 이런 주장은 민간단체들한테서만 나올 법한 것이고, 민간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이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관련 법령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별다른 구제조치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기껏해야 헌법재판소인데 현재 결정은 보통 1-2년을 넘기기 일쑤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 인권위 결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정책 및 대외협력소위원회 결정인데, 의결안건은 ‘무조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논점이 오갔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한계가 무엇이고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고민은 인권위의 고민에 바탕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해야 한다.

둘째 결정의 내용도 보도자료가 전부다. 이에 대한 취재도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결정문은 며칠 뒤에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관련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 및 대외협력소위원회의 문제의식이 사후에라도 생생하게 파악될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9일 아마도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의해 정책 및 대외협력소위원회로 이관된 것이다. 따라서 진정이 각하된 이후 거의 2달 보름 동안이나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가 무조건 비공개이므로 인권위 결정에 신속하게 의견을 반영할 기회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인권위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을 정책 및 대외협력소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번 진정에 대해 이후에라도 알 길이 막막하다.

넷째, 소위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의 해석문제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과 관련 진정인이 이미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후 기각 당한 사실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는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됐을 경우' 진정을 각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권리구제절차의 종료로 보아야 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스스로 독점하며 확고부동한 관행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인권위 대응의 어려움은 한마디로 "인권위의 폐쇄적 운영" 때문이라 하겠다. 인권위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거나 좋은 결정만을 선별해서 공표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권위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어 인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겠다.

□ 인권위의 결정구조

인권위는 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위에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책 및 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등 모두 5개의 중요 결정단위(조정위원회는 제외)가 존재한다. 전원위원회는 11명의 위원 모두로 구성되며 인권위의 최고의결기구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개의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들이 소위원장이 되고 2명의 비상임위원들이 결합하여 3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는 △법 제19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

장이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인권침해행위조사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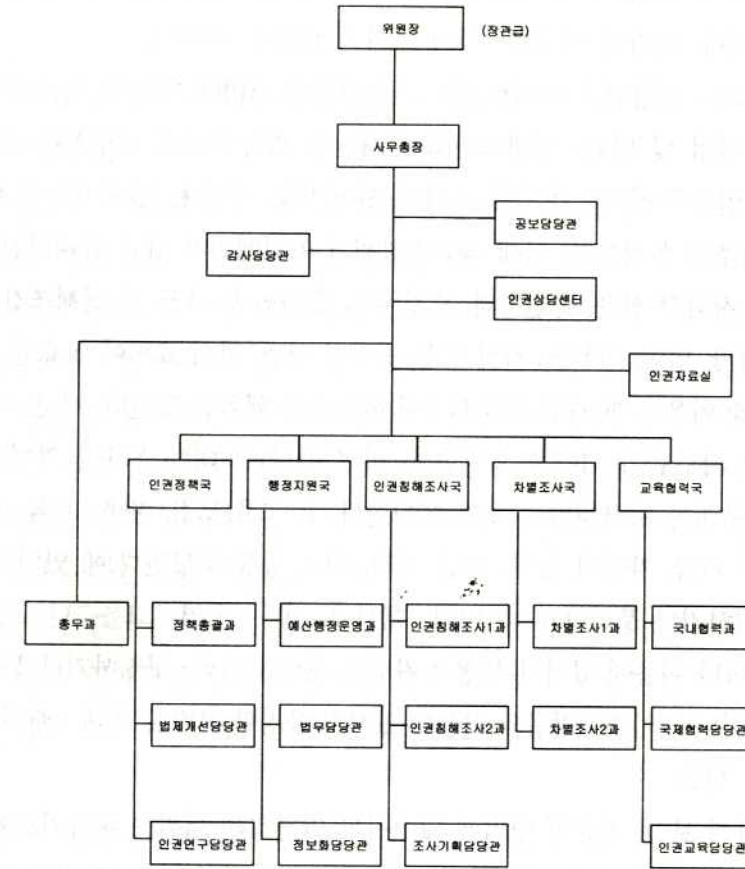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위의 업무 중 제2항은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제3항은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에서 맡고, 나머지 7개의 업무를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에서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원회법 제19조 업무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권위의 집행구조

인권위법 제16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권위 업무의 집행은 위원장-사무총장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정책 및 대외협력소위원회의 업무와 인권정책국과 교육협력국의 업무가 일치하고,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의 업무와 인권침해조사국의 업무가,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와 차별조사국의 업무가 일치한다. 하지만 업무의 관장은 각 소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관할하는 것이다. 이는 의문사위의 구조와 대별된다.

의문사위는 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문사위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지 않는 대신, 시행령으로 상임위원 2인 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